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요약	6
----	---

1부 박근혜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비정상적 길을 걷고 있는 검찰 조직	9
[별첨] 국정원 대선 개입 검찰 수사 외압 논란 일지	21
[별첨] 검찰개혁 대선 주요 공약 이행 평가	23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24
3.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30

2부 검찰 주요 인사(2013. 3.~2014. 1.)

1. 16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33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7
3. 검찰 중간 간부	41

3부 2013년 검찰 주요 수사

<국가기관 정치공작 대선 개입 관련 수사>

1. 국가정보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49
2.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의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수사	52
3.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폭로 국정원 전·현 직원 수사	54
4. 국정원, 박원순 제압·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수사	56
5.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의혹 수사	58
6.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수사	61

7.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63
--------------------------------	----

<선거법 관련 수사>

8. 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67
9. 전공노·전교조 대선개입 혐의 고발 사건 수사	68
10.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	70

<부패 관련 수사>

11.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73
12.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75
13.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77
14.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79
15. 효성그룹 탈세 수사	82
16. 원전 비리 수사	84
17.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사건 수사	90
18.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수사	94
19.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횡령 혐의 수사	96
20.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97
2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99

<노동, 민생 침해 관련 수사>

22.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102
23.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개입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수사	104
24. 이마트의 직원 불법 사찰,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수사	106
25.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108

<공안 수사>

26. 이석기 의원 등에 ‘내란 음모’ 혐의 적용 수사————— 112
27.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 114

<기타 수사>

28. 공무원노조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 현수막 관련 수사————— 119
29.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121

- 1994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법원 등의 권한 남용에 대해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왔다. 특히 지난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권력이 검찰을 통치의 도구로 이용하고 검사들도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 ‘정치검찰’, ‘MB검찰’이라 비판받는 것을 보면서, 검찰의 행보를 낱낱이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로 2008년부터 <검찰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2013년 10월부터는 <그 사건 그 검사 DB>를 운영하고 있다.
- 그 활동의 일환으로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이명박 정부 시기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개혁 약속, 상대적으로 권력에 대해 독립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신임 검찰총장으로 인해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특별수사팀 수사방해 등 권력의 검찰 흔들기가 극에 달해 결국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했던 1년이었다.
- 보고서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검찰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사항들과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과 인사 현황을 담고 있다.
 - 1부에서는 박근혜정부 1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요 공약에 대한 이행 상황도 기록하였고 청와대와 검찰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검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현황과 문제가 된 징계 사례들도 기록하였다.
 - 2부는 검찰·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점의 중간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을 정리하여 각 시기별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기록하였다. 검찰 감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부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박근혜정부 1년 간 검찰이 수사하였거나 처리한 사건들 중에서 사회적 관심이 컸거나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서 문제가 된 사건들 29건을 추려,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29건의 사건들은 △국가기관 정치공작 대선

개입 관련 수사, △선거법 관련 수사, △부패 관련 수사, △노동, 민생 침해 관련 수사, △공안 수사, △기타 수사로 분류하였다.

- 보고서는 언론 기사, 검찰 발표 보도자료, 정부관보, 법무부 웹사이트, 법률정보웹사이트 로앤비, 대법원 웹사이트, 정보공개청구, 판결문 등을 통해 취합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검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기록하지 못하고, 또 기록한 분야에서도 다루어지지 못한 사안들도 있을 것이나 검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검찰 감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듯 했으나, 집권세력의 검찰을 장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들로 인해 검찰이 무력화되고, 또 스스로도 더 이상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정치검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매우 절망스럽다.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면서 개혁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힘겨운 역할은 시민사회의 몫일 것이므로, 사법감시센터는 꾸준히 검찰의 행보를 감시하며 이를 꼼꼼히 기록해나감으로써 비판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1부

박근혜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검찰 조직

- 박근혜정부 검찰 1년 평가

서보학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시작하는 글

지난 2013년 2월 MB정부 5년을 마치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MB정부 검찰 5년에 대한 총평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이란 한 마디로 표현하였다. 국민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공익실현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정치에 종속되어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앞장섰다는 의미였다. 과거 MB정부 5년간 검찰이 일방통행식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탄압했던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기록하였다. 정권안보의 보위기구로서 국민들을 향해 법집행권을 마구 휘두른 검찰조직 만큼 충성스러운 조직이 또 있었을까? 그 대가로 검찰은 MB정부 5년 내 온갖 비리와 추문·스캔들, 권력남용혐의로 얼룩졌지만 조직을 환골탈태 시키라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았던 개혁요구를 피할 수 있었고 또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법조인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집권세력에 충성한 검찰간부들이 더 높은 자리로 보답받았음은 물론이다.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강고한 불신에 부딪쳐 있던 만신창이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였고 구체적으로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제의 도입’, ‘대검중수부의 폐지’, ‘검찰수사권의 대폭 축소’ 등을 대선공약으로 내 걸었다. 또한 깨끗하고 소신 있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위해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찰총장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집권 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졌는가? 국민들의 강고한 불신의 벽에 부딪쳐 있는 검찰조직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기 위해 처절한 자기개혁의 몸부림을 보여주었는가?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시녀’, ‘정권의 개’(견찰)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 주었는가?

박근혜정부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의 지난 행적을 되돌아보면 현재의 검찰도 과거 MB정부 5년 때의 검찰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으로 4년간의 행보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고 평가된다. 지난 1년간 검찰이 처리하였던 여러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검찰로서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었고 정치권의 간섭을 배격하기 위한 어떠한 저항의 몸부림도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견제 받지 않는 독점 권력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내부의 비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개혁도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검찰구성원들의 안이한 특권의식이 검찰을 한국사회 안에서 고립된 조직, 폐쇄된 조직, 국민의 뜻과 유리되어 따로 노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에 의한 통제, 권력 간의 견제 그리고 투명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검찰은 매우 이질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운영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비정상’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부정부패 등을 의미하고, 이걸 바로잡는 ‘정상화’의 목표는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 등이라고 한다. 검찰조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편파성을 타파하여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검찰의 독점권력·과잉권력을 깨트려 ‘견제와 균형 관계에 놓인 검찰권’을 확립하는 것이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과연 현재 검찰은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을까? 대답은 ‘아니올시다’이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여전히 정치검찰로서 또한 견제 받지 않는 독점 권력으로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2. 청와대에 장악된 검찰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통치에 있어서 검찰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한 면은 인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대선기간에서는 검찰 출신의 안대희 前대법관이 대선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무총리, 2기 비서실장,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검찰출신으로 채워졌다. 전통적으로 검찰출신들이 역할을 맡았던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에도 역시 검찰출신 인사들이 자리

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특히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 장관 등이 모두 공안검사 출신으로써 공안검사의 전성시대를 열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출신 인사들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고 다시 법집행권을 가진 검찰을 통해 통치를 수월하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검찰출신 인사 및 검찰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중용하면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조직을 확립시킬 수 있겠는가? 기대난망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시도는 채동욱 前검찰총장의 중도사퇴 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채동욱 前검찰총장은 최초로 제1기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난 2013년 4월 박근혜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에 취임하였다. 만신창이가 된 검찰조직을 떠맡은 채동욱 前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지금 성난 민심의 바다에서 격랑에 흔들리고 있다. 나는 그 바다에 떠 있는 함선의 선장처럼 절박한 심정",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 "믿음직한 법질서 수호자, 추상같은 사정의 중추, 든든한 인권의 보루로서 내 이웃과 공동체의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신뢰회복의 길",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에서 자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각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취임사에서 우리는 당시 검찰총장이 갖고 있었던 큰 위기의식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나름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자신의 말대로 채동욱 前총장은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개혁방안의 마련에 들어갔고(물론 당시 채동욱의 검찰조직이 국민들의 원하는 수준의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는 의문일 수 있음), 전두환 前대통령의 미납추징금 문제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달라지고자 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검찰의 독자노선 행보에 불안을 느끼던 집권세력은 채동욱 前총장의 검찰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문제에 적극적인 수사의 모습을 보이자 결국 검찰을 다시 장악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 방법으로 임기제 검찰총장의 중도낙마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터져 나온 것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한 채동욱 前총장의 혼외자식 스캔들이었다.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대한 뒷조사와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청와대와 국정원의 인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정확한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검찰은 채동욱 前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의 정보유출 수사를 맡았던 오현철 부장검사를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홍성지청으로 발령을 내었고 최근에는 수사팀에서 완전

히 배제시켰다. 이로 인해 윗선과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반면 별개로 진행 중인 채 前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 관련 수사는 최근 임씨가 출산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먼지털기식 수사가 강도 높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련의 상황으로부터 추측해 보면 검찰조직을 다시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뒷손에 의해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현실화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채동욱 前총장의 사퇴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검찰총장은 임명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깨고 김기춘 라인으로 평가받는 김진태 검찰총장을 임명하였다. 이 사건 이후 의기가 꺾인 검찰은 홀로 서기를 포기한 채 급격하게 다시 정치적 종속의 길로 들어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당연히 검찰내부의 개혁움직임도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당연한 수순으로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 내 일선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등 윗선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前국정원장·김용관 前서울청장 등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지시하여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보였던 윤석열 부장검사의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한편 윤 부장검사를 지시불이행으로 중징계하는 등 일선 수사검사들의 의기를 꺾음으로써 사실상 수사방해를 일삼았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수뇌부가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불법행위 앞에 애써 눈을 감고 일선 수사팀의 손발을 묶음으로써 수사를 무력화 시킨 것이다. 또한 검찰 조직 내에서도 정치권의 노골적인 검찰 흔들기에 대해 변변한 저항의 움직임조차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검사들 스스로 외압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서글픈 검찰의 자화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집권세력이 검찰에게 준 메시지는 분명하다. 말을 잘 듣는 검사에게는 당근을 주고 소신을 고집하는 자에게는 보복인사 및 징계 등의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노무현 前대통령의 소위‘NLL 양보주장’)을 불법유출하고 불법입수한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김무성 의원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고,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이 지난 대선 전 선거개입 댓글활동을 했다는 불법행위를 민주당에 제보한 공익제보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정모씨는 오히려 기소함으로써 정치적인 편파성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나아가 검찰은 야당과 진보세력을 옹아매기 위한 집권세력의 종북프레임 전략에도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단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과장이 매우 큰 형법상 내란음모죄로 기소한 것이나 법무부(검사에 장악되어 있는 법무부는 넓은 의미에서 검찰이라 할 수 있음)가 중복성향을 이유로 진보당 해산절차에 착수한 것을 좋은 예로 들 수 있겠다. 또한 검찰이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서까지 서울시 공무원들 간첩으로 낙인찍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도 곧 있을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 소속인 현 서울시장에 대해 중복타격을 붙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검찰이 단순한 법집행을 넘어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공안검사 전성시대의 검찰에 맞는 역할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법은 검찰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그 직무를 행할 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검찰청법 제4조). 반면 현재의 검찰은 정치적 종속의 길을 걸으면서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영예와 사명을 내 던져 버렸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정치검찰로서의 본색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민들은 정권에 장악된 검찰, 정치에 뛰어든 검찰에 절망하고 있다.

3. 여전한 검찰권의 남용

법은 검찰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부여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검찰청법 제4조). 그러나 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기소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을 한 손에 쥐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된 검찰은 과거 무수히 많은 사례에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만들어 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았다.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응권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은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국민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대부분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할 때 자주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남용 행태는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조작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하고 검찰이 이를 알면서도 위조된 증거를 법정에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했다는 혐의가 짙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노출

시켜 국민의 한탄을 자아내고 있다. 과거 음지에 숨어 불법을 저지른 전력이 많은 정보기관 국정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소 법과 원칙을 내 세우고 공익의 대표자임을 자임하는 검찰이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적발·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조직 전체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사죄해야만 하는 엄청난 범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준 권한을 국민의 등을 찌르기 위해 악용한 대표적인 남용사례라 할 수 있겠다. 법집행기관, 공익의 대표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지난 2010년 일본에서는 오사카 지검 특수부 검사가 후생성 간부를 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되어 일본 최고검찰청에 의해 당사자인 검사와 부장, 차장 검사가 구속되고 그 윗선인 검찰총장, 지검장 등이 줄줄이 사표를 쓰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사실은 일본 검찰 150년의 역사 동안 겪어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로 일본 사회와 법조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견제 받지 않는 검사의 권한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자백에 의존하고 증거를 짜 맞춰서라도 성과를 내야한다는 검찰 내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어 이후 강도 높게 검찰개혁을 진행한 계기가 되었다. 현재 천주교인권위에 의해 증거조작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직원들과 공안검사들이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와 무고죄로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혹의 한 당사자인 검찰이 조사한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 문제는 반드시 특검을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해야 하며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공안사건을 둘러싼 음습한 지대에서 벌어지는 국가기관의 각종 불법·탈법적 행위를 제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검찰의 권한남용은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각종 시국사건에 대해 무차별적 상고를 일삼는 행태에서도 여실이 드러난다. 예컨대 최근에도 검찰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무죄를 선고한 1차 인민혁명당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부림 사건 등에서 기계적으로 상고를 하여 과거 오랜 시간 고통 받은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트리고 있다. 과거 수많은 시국 사건에서 검찰은 안기부 및 경찰 보안수사대의 불법행위·증거조작을 눈감아 주는 조연의 역할로 혹은 직접 사건조작에 뛰어드는 주연의 역할로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양산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한 전례가 한 번도 없으며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였다는 비겁한 상황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시국사건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에 대해 겸허한 반성보다는 기계적인 상고로 대응하는 것은 검찰은 결코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오만함에서 나온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지난 잘못을 바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협조해야하는 것이 검찰의 마땅한 사명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검찰이 상고를 남발하여 정의의 실현을 더욱 지체 시키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수뇌부는 지난 1962년 박정희 정권의 검찰부에 의해 조작된 통일사회당 사건에서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구형 방침(백지 구형)을 무시하고 재판 당일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2012년 12월)한 임은정 검사를 중징계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해 반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이미 같은 사건의 다른 공동피고인 5명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에 당사자(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사망으로 유족이 제기한 재심사건에서도 당연히 무죄선고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무죄구형을 가로막고자 한 검찰수뇌부는 공익의 대표자임을 자처하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소신을 지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¹를 사후 중징계한 사실은 도저히 한국 검찰이 행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한편의 코미디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검찰수뇌부의 태도는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뻔뻔한 행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유신의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치졸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자각도 없는 검찰에 절망할 따름이다.

4. 땅에 떨어져 회복을 모르는 검찰윤리

이미 MB정부 5년간 우리는 땅에 떨어진 검찰윤리를 체험하였다. 법집행기관의 장

- 1 임은정 검사는 2011년 9월 유신독재에 의해 조작된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 형을 선고 받았던 박형규 목사에 대한 재심선고공판에서도 피고인에게 최초로 무죄를 구형한바 있다. 검찰조직의 내부 논리보다는 “정의”를 택했다는 임은정 검사는 당시 이런 감동적인 말을 남겼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 몸을 불살라 칠혹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 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다. 그러니 무죄를 내려달라.”

으로서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하고 청렴해야 할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조차 기업으로부터의 금품후원,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이중계약서를 통한 탈루, 기자금품제공, 다운계약서, 자식의 병역 의혹 등 많은 비리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09년 6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비위행위가 너무 많아 결국 중도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검사들 중에서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성추문 검사 등 각종 비리 검사들이 등장하여 부패하고 이완된 검찰내부문화를 방증해 주었고 10억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부장검사는 뇌물의 일부를 수표로 받기까지 해 검사들이 얼마나 부패에 둔감하고 자신감(나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홍역을 치른 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검찰윤리가 회복되고 있을까?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의 초대법무차관으로 임명되었던 김학의 前차관이 건설업자에게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취임 6일 만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추가수사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의 수사결과가 공정했을 것이라 믿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 前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라고 할 수 없는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 법원이 손등에 뽀뽀만 해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검찰은 성인 여성들을 성추행한 검사를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추상같지만 자기식구에 대해서는 관대한 검찰의 봐주기 문화가 다시 빛을 발한 사건이었다. 평소 이진한 차장검사가 “원세훈 前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은 무죄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해 수사팀을 압박하고, 대화록유출 관련 수사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봐주기식 서면조사를 해 놓고도 언론에 대해서는 거짓 해명을 하여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추행사실에 대해 기소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은 사실이 전혀 놀랍게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이진한 차장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받아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김진태 신임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일 먼저 검찰공무원 다운 도덕성과 기강을 보여주자”고 강조했지만 이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함으로써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잡고 땅에 떨어진 검사윤리를 끌어 올리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최근 브로커 검사가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검사는 부패한 윤리로도 문제없이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비위·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하고 또한 그 잣대는 공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672호)’에 따르면, 성 풍속 관련 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2년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기자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처분을 내린바 있으나 이진한 검사에게는 가벼운 징계조차 하지 않았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검찰·법무부 수뇌부의 결정은 검찰윤리의 회복이 공허한 말에 그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검사의 비리는 검사만이 손을 댈 수 있는 현재의 특권적 체제가 깨지지 않는 한 검사윤리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5. 실종된 검찰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제의 도입’, ‘대검중수부의 폐지’, ‘검찰수사권의 대폭 축소’ 등을 핵심 검찰개혁과제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채동욱 前검찰총장은 취임 당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져 있던 검찰을 구하기 위하여 자체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철저한 개혁을 약속한바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개혁 노력은 채동욱 前총장의 낙마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 중에서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제의 도입’, ‘대검중수부의 폐지’는 형식적으로는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야 간 1년여의 지루한 줄다리기에 끝에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도와 제도특검의 형식을 띤 상설특검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에 있어서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무늬만의 개혁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선 대검중수부 폐지와 관련하여, 과거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대검중수부가 검찰총장(또는 배후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를 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에 검찰수사권이 남용·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중수부 폐지가 강력히 요구되었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대검중수부를 폐지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에 설치함으로써 대검중수부 폐지에 따르는 의미를 크게 반감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대검이 직접 지휘·지원한다면 검찰총장(또는 배후의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수사가 휘둘리는 과거의 폐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검중수부 폐지를

요구한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외면한 절반의 성공에 그친 개혁이라고 할 것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원래 검찰개혁과는 관련이 없는 제도이다. 사실 수사권이 아닌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만을 갖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고위직들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이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특검의 직접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막의 일종으로 제시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 제도이다. 그나마 이번에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바와 다르게 특검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내용적으로 많이 후퇴한 제도이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은 특별감찰관이 비리를 밝혀낸 경우 특검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여야 합의과정에서 일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되도록 특검수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상설특검제의 도입 내용은 더욱 실망스럽다. 국민들이 상설특검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이 상시적으로 집권층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감시·처벌함으로써 법치국가의 건강성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나아가 현재 독점권력의 자만과 부패에 빠져 있는 검찰을 각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된 상설특검의 내용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무늬만 상설인 특검이다. 상설특검제도의 본질은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두어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자는데 있는 것인데, 이번에 도입된 제도특검은 기존의 사안별 특검과 다를 바 없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가 협의하여 특검도입을 의결하는 비상설 특검이며, 특히 특검발동을 위한 국회의결요건을 다수당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정해 여전히 집권세력의 동의가 없으면 특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메가톤급 핫 이슈인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사건이나 국정원의 증거날조사건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을 여당이 반대하여 특검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상설특검법안이 실제 얼마나 무용한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설특검제도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인 제도라고 혹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대한 엄중한 약속을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채 성과에 급급해 껍데기 특검제도에 합의한 야당도 매우 강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권의 대폭 축소’는 과잉권력화 된 검찰권력을 분산시키고 수사단계에서 검찰·경찰 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권한의 남용을 막겠다는 의

도가 담겨 있는 공약이었다. 경찰 역시 국민의 불신에 부딪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권력은 집중될 때 부패하기 쉽고 나누어 서로 견제시킬 때 남용의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이 진리인 점을 고려하면 애당초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로 이양하겠다는 공약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기소기관으로서의 본래 사명보다는 지나치게 수사기관화 되어 있는 검찰기능의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애당초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많은 검찰인사를 중용하고 검찰조직의 충성에 기대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수사권을 손에 쥐고 칼잡이를 자처하는 한국 검사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수사권의 축소를 단행할 의지나 용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매번 공약에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전국 12만 경찰관들이 애처로울 뿐이다.

이렇듯 박근혜정부 1년 기간에 검찰개혁은 작은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검찰의 권한 및 기득권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실종이라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개혁이 실패한 데에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 버리듯 하는 집권세력의 기만술과 기득권 집단인 검찰의 반발 그리고 국민의 이익 보다는 친정인 검찰의 이익을 앞세우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컸다고 할 수 있겠다. 집권 1년차에 실패한 검찰개혁이 과연 박근혜정부의 남은 기간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이 매우 씁쓸할 따름이다.

6. 맺는 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할 가장 ‘비정상’인 분야는 어디일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법치’분야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를 표방한다. 진정한 법치국가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지는 나라, 곧 권력자와 공권력이 법에 구속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이 예방되는 나라다. 반면 권력자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도구화’하여 통치하는 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법치국가가 아니다. 이런 통치 체제에서는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폭력을 정당화시켜주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무기가 되기 쉽다. 그런데 현재 이 땅에서 ‘정의와 공평’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기득권자를 위한 법, 가진 자를 위한 법, 승자를 위한 법이라는 냉소주의가 이 땅을 뒤덮고 있다.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런데 이 위기의 선봉에 검찰조직이 자리 잡고 있다. 검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 집행 기관이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 기관이다. 게다가 법은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라는 영광스러운 위상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의와 공익의 실현에 봉사하기보다는 정권안보의 전위대 역할에 충실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골몰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자로 지목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앞에 무기력한 검찰, 깨어진 민주주의보다 정권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검찰, 정치권의 노골적 흔들기에도 변변한 저항조차 못하는 검찰, 약자에게는 추상적이고 기득권층의 부패에는 관대한 검찰에 법 집행의 전권을 맡기고 과연 ‘법치주의의 정상’을 말할 수 있을까?

지난 MB정부 때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130만부가 넘는 베스트셀러에 오른바 있다(미국에서는 10만부 정도 팔렸다고 한다). 다양한 법사상과 철학이 소개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없는 책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거 노무현 前대통령의 인권변호사 시절을 그린 영화 ‘변호인’이 1,100만이 넘는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며 대히트를 기록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 국민들이 사회의 부조리를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 마음속에 사회정의에 대한 강한 목마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왜곡되고 비틀어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조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앞으로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참]

국정원 대선 개입 검찰 수사 외압 논란 일지

날짜	내용
2012.12.12.	민주당,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
2012.12.16.	경찰, 김하영씨 컴퓨터 하드분석 결과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 며 대선후보 TV토론 직후 심야(밤11시)에 긴급히 중간수사결과 발표
2012.12.19.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3. 5.말 ~ 6.초	검찰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반대하며 수사진척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법무부를 통한 청와대의 수사개입 및 외압 문제가 드러남
2013. 6.10.	신경민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 위원장,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전화해 부당한 압력 행사” 주장함. 국정원 송모 정보관,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조회 - 국정원 송모 정보관이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아버지 이름이 검찰총장과 같은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함.
2013. 6.11.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 조 행정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알려주며,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했음.
2013. 6.25.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조회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김모 경정이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를 찾아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함.
2013. 6.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과장,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조회 - 한모 과장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함.
2013. 9. 6.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조회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김모 경정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함.
2013. 9.13.	황교안 법무부장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2013. 9.27.	법무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관련 감찰 결과 발표, 청와대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 건의
2013.10.17.	조영곤 서울지검장, 지시 불이행과 보고 절차 누락 이유로 윤석열 특별 수사팀장 직무배제 명령 -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에서 18일부터 배제
2013.10.21.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 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함. -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 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 고 말했다”고 진술함.
2013.10.28.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후임으로 이정희 수원지검 형사1부장 합류하고, 정진우 수원지검 부부장 팀원으로 합류
2013.11.11.	대검 검찰본부,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 관련 감찰 결과 발표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 사수사부장), 지시불이행 등으로 각각 정직, 감봉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 무혐의 종결. 댓글 문건 포함 수사보고서 유출 관련 특별감찰 결과, 유출 흔적 찾을 수 없어 특별감찰 종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2013.11.18.	법무부 감찰위원회,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 사수사부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기로 결정
2013.11.21	특별수사팀이 추가 확인한 120만 여건 트위터 게시글로 추가 기소를 위 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법무부와 마찰을 빚었다고 언론 보도됨. - 공소장 변경신청 마감일인 20일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여러 이 유를 대면서 결재를 미뤄 온 것으로 언론 보도됨. 이에 수사팀 검사들은 출근 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고 하여 법무부의 결재를 받아냈고, 20일 밤 9시쯤 법 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 이진한 차장검사는 수사팀으로부터 추가 트위터 글 확보에 대한 보고를 받 은 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언론 보도됨. 이 차장검사는 새로 발견한 트위터 글을 ‘공소장 변 경이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만 제출하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축소 및 은폐 논란이 일어났음.
2013.12.18.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정직 1개월, 박형철 전 부팀장 감봉 1개월 징계 결정
2014. 1.10.	윤석열 전 수사팀장,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 박형철 부장검사,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참

검찰개혁 대선 주요 공약 이행 평가

공약	세부내용	이행 평가	평가근거 및 특이사항
상설특검제 도입	상설특별검사제 통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	2014년 2월 2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이는 제도특검으로 공약인 상설특검으로 볼 수 없음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 국회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 임명	○	2011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해 채동욱, 김진태 총장 임명
법무부 등 파견검사 제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	외부 기관 파견 검사 복귀, 법무부 파견 검사 감축 등이 진행됐으나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편법 파견 논란 있음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 안 됨.
대검 중수부 폐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 부서에서 기능을 대신 수행	○	2013년 4월 중수부 폐지하고 대검 내에 직접 수사 기능이 없는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설치. 중수부 폐지했더라도 반부패부가 지검 특수수사 지휘를 계속하는 것이므로 검찰권의 중립적 사용에 여전히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있음.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를 검찰 시민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등의 권한 강화	×	공약에 없던 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설치의 의미가 있지만 위원회 강화를 위한 공약 사항은 진행되지 않음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	진행사항 없음

참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1. 2013년 3월~2014년 2월에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 총 16명

- 박근혜정부 출범 후 2014년 2월까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처분한 검사들의 징계 현황임.
- 징계를 받아 관보에 공개된 이들임.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관보에 실리지 않은 경우들은 포함되지 않았음.²
- 이 자료는 징계처분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징계대상 행위를 한 시점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2013년 3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의 행위로 징계받은 경우는 16명중 6명이고, 나머지 10명은 그 이전의 행위가 드러나 징계받은 경우임. 박근혜 정부 1년기간중에 범한 행위가 차후에 드러나 징계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해야 함.

○ 징계 사유에 따른 구분

징계 사유	징계 받은 검사 수
향응수수 등	2명
성추행	2명
성추문 사건 사진 유출 관련	5명
음주운전	2명

2 이른바 ‘연예인 해결사’ 검사의 경우 대검 감찰본부에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으나 징계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관보에서 확인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음.

직무 태만	1명
내부 보고 절차 위반, 지시 불이행	2명
재산변동 신고 누락	3명
*동일인이 여러 사유로 징계 받은 경우 각 유형에 포함시킴	

○ 징계 처분에 따른 구분

징계 종류	인원	비고
면직	2명	
정직	1명	정직 1월
감봉	5명	감봉 1월 2명, 감봉 2월 1명, 감봉 6월 2명
견책	8명	

○ 16명의 징계 내역

	처분일	이름	처분	징계사유(사유발생시기)
1	2013. 6.19.	고*곤	견책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하여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2012.11.)
2	2013. 6.21.	박*영	견책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하여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2012.11.)
3	2013. 6.24.	조*호	견책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하여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2012.11.)
4	2013. 6.26.	이*형	견책	노래방 회식 중 법원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배를 만지는 등 품위 손상(2013. 2)
5	2013. 6.26.	박*영	감봉 6월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 여성의 사진 파일을 생성하고 내부 전송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2012.11.)
6	2013. 6.26.	국*	감봉 6월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 여성의 사진 파일을 생성하여 결과적으로 실무관이 사진 파일을 외부 유출하게 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2012.11.)

7	2013. 6.26.	안*훈	면직	근무하던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7회 약 234만원 상당 골프 접대를 받아 향응을 수수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2012. 2.~2013. 2.)
8	2013. 6.26.	강*석	면직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수수, 유흥주점 및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 촬영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2010.11.~12.)
9	2013. 9.17.	하*철	견책	정기재산변동신고시 순누락금액 334,160,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2012. 2.29.)
10	2013. 9.26.	류*근	감봉 2월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주,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품위 손상(2013. 4. 4.)
11	2013.12.30.	윤*열	정직 1월	○ 2013. 10. 16.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10. 17.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 2013. 10. 17.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박형철과 함께 10. 18. 보고 및 결재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 2013. 2. 21.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15,136,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12	2013.12.30.	박*철	감봉 1월	○ 2013. 10. 16.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보고 및 결재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10. 17. 이를 집행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 2013. 10. 17. 윤석열 특별 수사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함께 10. 18. 보고 및 결재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검사로서의 직무상의무 위반
13	2014. 2. 3.	박*의	견책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품위 손상(2013.11.15.)
14	2014. 2. 4.	정*선	견책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필요적 벌금 병과 구형을 누락하여 직무 태만 등(2013. 3.)

15	2014. 2. 4.	민*천	견책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순누락금액 23억 5,345만원의 재산을 증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2013. 2.)
16	2014. 2.10.	안*석	감봉 1월	검사실 회식 중, 검사 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품위 손상 (2013.10.)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등에 대한 징계사건

2013년 10월 17일,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리트윗)한 것으로 확인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함.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 없이 수사팀장 전결로 처리했다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윤석열 수사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림. 그러나 다음 날 수사팀은 전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냄.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팀장은 15일 밤 조 지검장 집을 찾아가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조영곤 지검장은 보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보고 여부와 절차에 대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수사 외압에 맞선 것인지 항명인지 논란이 됨.

조 지검장의 감찰 요청으로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를 벌였으나, 소환, 대질조사 없이 서면조사와 전화 통화 몇 번으로 사실 관계 조사를 끝낸 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각각 정직 1월과 감봉 1월의 처분을 받고 반면, “야당을 도와 줄 일이 있느냐”며 정치적 판단을 하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산 조 지검장과 국정원 직원 소환에 대해 방해한 의혹을 받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징계위가 ‘무혐의’ 처리하여 형평성 논란, 채동욱 총장에 이어 제2의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논란이 있었음.

이어 2014년 상반기 인사에서도 윤석열, 박형철 검사는 지방 고검 검사로 좌천되고, 이진한 검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여기자 성추행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한 징계면제 사건

2013년 12월 26일 기자단 송년회식 중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당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2014년 1월 14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징계가 아닌 내부 주의 조치에 불과한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음.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672호)’에 따라 성 풍속 비위 사건은 최하 ‘전책 이상’이라는 징계 규정도 어긴 것이며, 과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유사한 사건에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아래 표 참고)한 사례에 비추어도 형평에 맞지 않음. 이진한 검사는 감찰을 받는 와중에 인사상 불이익 없이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받았음(피해 기자는 2014년 2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함).

이는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라인에 있던 이진한 2차장 검사가 특별수사팀원들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한 것에 대한 특혜성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이진한 2차장은 수사기간 내내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원들과 달리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고, 수사상황과 관련 정보를 집권층 및 외부에 유출한 인사로 지목되고 있음.

<과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성추행 사건 징계 현황>

	처분일	이름	처분	징계사유(사유발생시기)
1	2011.10.27.	구*희	면직	검사 직무대리 실습 중인 여성 1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2011. 1.)
2	2012. 4.26.	최*호	정직 3월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기자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2012. 3.)
3	2011.10.27.	박*동	감봉 2월	검사 직무대리 실습 중인 여성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2011. 5.)

4	2014. 2.10	안*석	감봉 1월	검사실 회식 중, 검사 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2013.10.)
5	2011. 3.18.	손*호	견책	후배 신임검사들과의 회식 중 여검사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2010.10)
6	2013. 6.26.	이*형	견책	노래방 회식 중 법원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배를 만지는 등 (2013. 2.)

○ 김학의 법무부차관(전 대전고검장)의 ‘성접대’ 의혹 연루

박근혜정부 들어 첫 법무부차관으로 김학의 대전고검장이 임명되었으나, 건설업자의 고위층 성접대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3월 15일 차관으로 취임한 뒤 6일 만에 사임함.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로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음.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최고위급 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는데, 김 차관의 성접대의혹 사건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입혔음. ^[참]

3.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검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 사정 기관을 총괄하고, 법무부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사실상 파견된 검사 등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무부장관 또한 장관에게 부여된 지휘권뿐만 아니라 인사권과 함께 법무부 주요 부서에 속해 있는 검찰간부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나 인사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전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민정수석비서관을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로 구성하고 연수원 기수서열도 고려하여 민정수석 -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라인을 통해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용이하게 하였다. 실제로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나 내곡동 사저 불법매입 수사 등에서 검찰의 성과는 미미하였는데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정부 6개월 만에 검찰 고위출신으로 청와대 비서실 전격 교체

박근혜정부는 출범 초기 1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허태열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이지만 연수원 기수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보다 높지 않고 이전 검찰에서의 직책도 높지 않은 박상도 전 대구지검서부지청장을 임명했다. 다만 허태열 비서실장과 박상도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그리고 경남 하동 출신인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모두 영남, 성균관대 법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채동욱 검찰총장이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적극 나서자, 6개월 만에 비서실에 대한 문책성 경질을 하고 새로 비서실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인사시점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2013. 3.	허태열	곽상도	황교안	채동욱
	비검사 출신	연수원 15기	연수원 13기	연수원 14기
	경남 고성 / 부산고 / 성균관대 법대	대구 / 대건고 / 성균관대 법대	서울 경기고 / 성균관대 법대	서울 세종고 / 서울대 법대
	18대 국회의원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전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에서 이동
2013. 8. (김진태 검찰총장은 10월 내정 12월 임명)	김기춘	홍경식	상동	김진태
	-	연수원 8기		연수원 14기
	경남 거제 / 경남고 / 서울대 법대	경남 마산 / 서울 경복고 / 서울대 법대		경남 사천 / 진주고 / 서울대 법대
	전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전 서울고검장		전 대검 차장

2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김기춘 비서실장은 검찰총장(1988~1990)과 법무부장관(1991~1992)을 역임하였으며, 홍경식 민정수석은 채동욱 검찰총장,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장관보다 연수원 기수가 5~6기수나 높다. 기수 서열 관계에 매우 민감한 법무검찰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으로 교체된 인사는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위상이 그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으며, 이는 법무검찰조직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모두公安검사 출신이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 김진태 검찰총장은 모두 경남,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참]

2부

검찰 주요 인사

(2013. 3. ~ 2014. 1.)

1. 16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검찰(법무부 포함) 조직의 간부 직책 중에서 검찰(법무)활동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또는 중요사건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으로는 다음 16개가 우선 꼽히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³

- **법무부 장관** : 검찰·행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법무부 차관** :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장관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차관을 보좌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5조).
- **법무부 검찰국장** : 검찰행정(인사, 조직 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검찰청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과 검찰사무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수사·공소유지 등의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0조).
- **검찰총장** :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대검 차장** :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3 중수부 폐지 방침에 따라 2013년 4월 인사부터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1과장, 중수2과장, 첨단범죄수사과장 등 중앙수사부 고검검사급 보직을 모두 발령하지 않아, 핵심 직책에서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중수1, 2과장을 뺀. 2013년 12월 중수부를 대체하는 반부패부 출범, 반부패부장과 수사지휘과장, 수사지원과장 전보, 보임함(2013.11.29.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 **대검 공안부장** : 대검 공안부를 관할하며 공안1과장, 2과장, 3과장을 지휘하고, 대검공안기획관 1인의 보좌를 받는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 공안기획관** : 공안업무 기획, 공안사건 수사지도, 공안정세 분석 및 판단, 공안관련 출판물과 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검 공안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 공안1과장** :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 공안2과장** : 선거사건 사건, 정당정치자금 등 관련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지휘 감독 등을 맡는다.(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 공안3과장** : 선거사건, 학원관련 사건, 사회·종교·정치 등 단체 관련 공안 사건 및 집단행동 관련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8조)
-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고, 범죄정보의 수집·관리업무의 기획·조정, 지도·감독 및 교육, 검찰 수사 및 형사정책과 관련한 각종 정보·여론의 수집, 정책건의 등을 담당한다. 범죄정보기획관 산하 범죄정보1·2담당관은 각종 범죄정보에 관한 수집·내사·관리 및 송부를 담당한다(대검찰청 사무분장규정).
- **서울중앙지검장** : 서울중앙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서울중앙지검 1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8부와 조사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총무부와 공안1, 2부, 공공형사수사부, 공

판1, 2부, 외사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1~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1, 2부, 금융조세조사1, 2부를 지휘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한다.(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2조)

이들 16개 직책에 있었던 인사들의 명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검찰(법무) 16개 주요 직책

인사시점	성명	출생지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법무부장관						
2013. 3.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13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검찰총장						
2013. 4.	채동욱 ⁴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14	서울고검장
2013.12.	김진태	경남 사천	진주고	서울대 법대	14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
대검 차장						
2013. 4.	길태기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대	15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3.12.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16	서울고검장
법무부차관						
2013. 3.	김학익 ⁵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14	대전고검장
2013. 4.	국민수	충남 서산	서울 대신고	서울대 법대	16	법무부 검찰국장
2013.12.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6	부산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2013. 4.	조영곤 ⁶	경북 영천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6	대구지검장
2013.12.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16	수원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2013. 4.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18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3. 4.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19	법무부 인권국장
2013.12.	안태근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20	법무부 인권국장
대검 공안부장						
2013. 4.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17	서울고검 차장
2013.12.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18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3. 4.	윤갑근	충북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19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13.12.	신유철	경기	서울 장훈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고검 송무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13. 4.	이진한	경기 화성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21	대검 공안기획관
2014. 1.	윤웅걸	전남 해남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21	서울서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3. 4.	박정식	대구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북부지검 차장
2014. 1.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대구서부지청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2013. 4.	김영종	강원 정선	건국사대부고	한양대 법대	23	부산지검 형사1부장
2014. 1.	권익환 ⁷	-	-	-	-	인천지검 2차장

대검 공안기획관						
2013. 4.	김창희	서울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22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2014. 1.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23	법무부 대변인
대검 공안1과장						
2013. 4.	송규종	전남 고흥	순천고	부산대 법대	26	대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2014. 1.	백재명	부산	부산 동천고	서울대 법대	26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2과장						
2013. 4.	김신	서울	마포고	서울대 법대	27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2014. 1.	이문한	경기 포천	서울 휘문고	한양대 법대	27	대검 공안3과장
대검 공안3과장						
2013. 4.	이문한	경기 포천	서울 휘문고	한양대 법대	27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2014. 1.	배용원	경남 순천	순천고	서울대 법대	27	대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

- 4 채동욱 검찰총장의 재임 기간 2013. 4. 4.~2013. 9.30.
- 5 김학의 법무차관 재임 기간 2013. 3.15.~21.
- 6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 2013. 4.~11.
- 7 2013년 2월 서울고검 검사 신규임용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2013년~2014년 1월 기간 동안 검사장급 이상 직책의 검찰·법무 지휘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2>는 고등검사장급 이상을 <표3>은 검사장급 직책을 담았다.

<표2> 고등검사장 이상 직책

인사시점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법무부장관						
2013. 3.	황교안	서울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13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검찰총장						
2013. 4.	채동욱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14	서울고검장
2013.12.	김진태	경남 사천	진주고	서울대 법대	14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
대검 차장						
2013. 4.	길태기	서울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대	15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3.12.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16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2013. 4.	소병철	전남 순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5	대구고검장
2013.12.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16	대구고검장
법무부차관						
2013. 3.	김학의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대	14	대전고검장
2013. 4.	국민수	충남 서산	서울 대신고	서울대 법대	16	법무부 검찰국장
2013.12.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6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2013. 4.	임정혁	서울	중앙고	서울대 법대	16	대검公安부장
2013.12. 4.	길태기	서울	서울 동북고	고려대 법대	15	대검 차장
2013.12.19.	국민수	충남 서산	서울 대신고	서울대 법대	16	법무부 차관
대전고검장						
2013. 4.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17	대검 중수부장
2013.12.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17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						
2013. 4.	김현웅	전남 고흥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6	광주지검장
2013.12.	김경수	경남 진주	진주고	연세대 법대	17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						
2013. 4.	이득홍	대구	관악고	고려대 법대	16	부산지검장
2013.12.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대	17	광주고검장
광주고검장						
2013. 4.	박성재	경북 청도	대구고	고려대 법대	17	창원지검장
2013.12.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17	서울서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2013. 4.	조영곤	경북 영천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6	대구지검장
2013.12.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16	수원지검장

〈표3〉 검사장 직책별 인사⁸

인사시점	성명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이전 직책
법무부 검찰국장						
2013. 4.	김주현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18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2013. 4.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서울대 법대	18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13.12.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18	춘천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13. 4.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18	광주고검장 차장
2013.12.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대	19	대전고검 차장
법무부 감찰관						
2010. 9.	안장근	전북 김제	익산 남성고	성균관대 법대	15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13. 4.	봉옥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19	법무부 인권국장
2013.12.	안태근	서울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20	법무부 인권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2013.12. 4.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1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3.12.19.	강찬우	경남 하동	진주고	서울대 법대	18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공안부장						
2013. 4.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17	서울고검 차장
2013.12.	오세인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18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형사부장						
2013. 4.	박민표	서울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대	18	서울고검 송무부장
2013.12.	조은석	광주	광주 광덕고	고려대 법대	19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강력부장						
2013. 4.	김해수	대구	대구고	고려대 법대	18	부산고검 차장
2013.12.	윤갑근	충북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19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2013. 4.	이창재	서울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19	광주지검 차장
2013.12.	김진모	충북 청주	청주 신흥고	서울대 법대	19	광주고검 차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2012. 7.	이건리	전남 함평	전주고	서울대 법대	26	창원지검 검사장
2013.12.	강경필	제주 서귀포	제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7	의정부지검장
대검 감찰본부장						
2012. 9.	이준호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16	법무법인 총정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3. 4.	윤갑근	충북	청주고	성균관대 법대	19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13.12.	신유철	경기	서울 장훈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고검 송무부장
서울동부지검장						
2013. 4.	황윤성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16	법무부 법무실장
2013.12.	송찬엽	전북 부안	전주고	서울대 사범대	17	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검장						
2012. 7.	박청수	경북 경산	대구 경북고	한양대 법대	16	의정부지검 검사장
2013.12.	이영렬	서울	경북고	서울대 법대	18	전주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2013. 4.	백종수	경기 양주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17	제주지검장
2013.12.	김해수	대구	대구고	고려대 법대	18	대검 강력부장
서울서부지검장						
2013. 4.	조성욱	부산	경성고	서울대 법대	17	대전지검장
2013.12.	문무일	광주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1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의정부지검장						

2013. 4.	강경필	제주 서귀포	제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7	울산지검장
2013.12.	이명재	서울	서울 경신고	고려대 법대	18	제주지검장
인천지검장						
2012. 7.	정병두	경남 하동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16	법무부 법무실장
2013.12.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						
2012. 7.	김수남	대구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16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2013.12.	신경식	서울	고대 부속고	서울대 법대	17	광주지검장
춘천지검장						
2013. 4.	정인창	부산	부산남고	서울대 법대	18	대구고검 차장
2013.12.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19	부산고검 차장
대전지검장						
2013. 4.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1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13.12.	박민표	서울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대	18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2013. 4.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18	대구지검 1차장
2013.12.	김강욱	경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구지검장						
2013. 4.	최재경	경남 산청	대구고	서울대 법대	17	전주지검장
2013.12.	오광수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18	청주지검장
부산지검장						
2013. 4.	김희관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법대	17	의정부지검장
2013.12.	백종수	경기 양주	인천 부평고	고려대 법대	17	서울북부지검장
울산지검장						
2013. 4.	변찬우	경북 문경	대구 대건고	경북대 법대	18	서울중앙지검 1차장
2013.12.	봉욱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19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창원지검장						
2013. 4.	한무근	경북 경산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7	춘천지검장
2013.12.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대	18	서울고검 차장
광주지검장						
2013. 4.	신경식	서울	고대 부속고	서울대 법대	17	청주지검장
2013.12.	변찬우	경북 문경	대구 대건고	경북대 법대	18	울산지검장
전주지검장						
2013. 4.	이영렬	서울	경북고	서울대 법대	18	대전고검 차장
2013.12.	이창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19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2013. 4.	이명재	서울	서울 경신고	고려대 법대	18	서울고검 형사부장
2013.12.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법대	19	대구고검 차장
서울고검 차장						
2013. 4.	김영준	전북 군산	서울고	서울대 법대	18	서울고검 공판부장
2013.12.	조희진	서울	성신여고	고려대 법대	1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전고검 차장						
2013. 4.	황철규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대	19	안산지청장
2013.12.	이금로	충북 괴산	청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	20	대구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						
2013. 4.	김수창	서울	고려고	연세대 법대	1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3.12.	김호철	서울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20	고양지청장
부산고검 차장						
2013. 4.	공상훈	대구	대구고	서울대 법대	19	대전지검 차장
2013.12.	박정식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중앙지검 3차장
광주고검 차장						
2013. 4.	김진모	충북 청주	청주 신흥고	서울대 법대	19	부산지검 1차장
2013.12.	안상돈	서울	우신고	고려대 법대	20	수원지검 1차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2013. 4.	조은석	광주	광주 광덕고	고려대 법대	1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3.12.	김오수	전남 영광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20	부산지검 1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⁹						
2013. 4.	정점식	경남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대	20	안양지청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2013. 4.	신유철	경기	서울 장훈고	서울대 법대	20	순천지청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2013. 4.	임권수	전남 화순	광주 제일고	서울대 법대	16	서울북부지검장
2013.12.	이건주	부산	인천고	서울대 법대	17	대전지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13. 4.	김강욱	경북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3.12.	정점식	경남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대	20	서울고검 공판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13. 4.	정동민	경남 양산	부산 금성고	고려대 법대	16	서울서부지검장
2013.12.	한무근	경북 경산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17	창원지검장

참

8 검사장급 보직으로 운용되던 대구지검 1차장, 부산지검 1차장, 대전지검 차장, 광주지검 차장 보직을 2013년 4월 인사부터 검사장급 보직에서 제외함(2013. 4.18.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2, 13호 개정).

9 2013년 12월 인사부터 서울고검 공판부장 및 송무부장도 검사장급 보직에서 추가로 제외(2014. 1.10.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개정).

3. 검찰 중간 간부

아래 <표4>는 법무부, 대검, 서울, 인천, 수원지검 중간 간부급의 인사내역이다.

<표4> 중간 간부급 인사(고검 검사급 중 일부 제외)

소속직책	인사시점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연수원
법무부						
대변인	2013. 4.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23
	2014. 1.	김한수 ¹⁰ (金翰秀)	서울	송실고	서울대 법대	24
장관정책보좌관	2013. 4.	권선영	-	제주 남영고	고려대 법대	34
감찰담당관	2013. 4.	유일준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21
	2014. 1.	윤희식	-	진주고	건국대 법대	23
법질서선진화과장	2013. 4.	양요안	제주	제주 오현고	성균관대 법대	27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단장	2013. 4.	김봉석	경남 고성	진주고	서울대 법대	23
	2014. 1.	안성수	-	인하대 부속고	서울대 국제경영학	24
법무심의관	2013. 4.	장영섭	경북 영주	영주 영광고	연세대 법대	25
	2014. 1.	정승면	대구	대구 덕원고	고려대 법대	26
법무과장	2013. 4.	정승면	대구	대구 덕원고	고려대 법대	26
	2014. 1.	전성원	-	휘문고	서울대 법대	27
국제법무과장	2013. 4.	전승수	전북 정읍	전북 호남고	서울대 경영학	26
	2014. 1.	김철수	-	광주 송일고	서울대 법대	27
국가송무과장	2013. 4.	이태승	경북 성주	서울 서라벌고	연세대 법대	26
통일법무과장	2013. 4.	최기식	-	밀양고	고려대 법대	27
법조인력과장	2012. 7.	안권섭	전북 남원	전주 완산고	연세대 법대	25
	2014. 1.	김대현	-	경남 통영고	서울대 법대	27
상사법무과장	2012. 7.	서봉규	대구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대	26
	2014. 1.	이준식	-	경기고	고려대 법대	28
검찰과장	2013. 4.	정수봉	경북 영양	서울 인창고	서울대 법대	25
	2014. 1.	심우정	충남 공주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26
형사기획과장	2013. 4.	심우정	충남 공주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26
	2014. 1.	이선욱	경북 안동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27
공안기획과장	2013. 4.	백재명	부산	부산 동천고	서울대 법대	26
	2014. 1.	김신	서울	마포고	서울대 법대	27
국제형사과장	2013. 4.	이선욱	경북 안동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27
	2014. 1.	이성규	-	충주고	서울대 법대	28
형사법제과장	2012. 7.	문홍성	전북 군산	군산 제일고	연세대 법대	26
	2014. 1.	박철웅	-	여수고	서울대 법대	28
범죄예방 기획과장	2013. 4.	조종태	경남 함안	마산 중앙고	서울대 국어국문학	25
	2014. 1.	배용찬	-	서울 우신고	서울대 법대	27
보호법제과장	2012. 7.	이철희	전주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대	26
	2014. 1.	정희원	-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	28
인권국장	2013. 4.	안태근	서울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20
	2014. 1.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21
인권정책과장	2013. 4.	이주형	대구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대	25
	2014. 1.	안미영	강릉	춘천유봉여고	서울대 불문학, 법대	25

인권구조과장	2013. 4.	안범진	경북 예천	동국대 부속고	한양대 법대	26
	2014. 1.	신호철	-	서울 한성고	연세대 경영학	26
인권조사과장	2013. 4.	박소영	서울	서울여고	이화여대 법대	27
	2014. 1.	김지현	-	광주 숭일고	서울대 경영학	28
대검찰청						
대변인	2013. 4.	구본선	인천	인하대 부고	서울대 교육학	23
범죄정보기획관	2013. 4.	김영중	강원 정선	건국사대 부고	한양대 법대	23
	2014. 1.	권익환	-	-	-	-
범죄정보 1담당관	2013. 4.	김관정	경북 명주	대구 영진고	고려대 법대	26
	2014. 1.	조종태	경남 함안	마산고	서울대 국어국문학	25
범죄정보 2담당관	2013. 4.	주영환	경북 울진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27
	2014. 1.	김남우 ¹¹	-	-	-	-
과학수사 기획관	2013. 4.	김영대	경북 청송	대구 영남고	경북대 법대	22
	2014. 1.	최성진	-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23
과학수사 담당관	2013. 4.	김범기	서울	서울 재현고	고려대 법대	26
	2014. 1.	신성식	-	순천고	중앙대 법대	27
디지털 수사담당관	2013. 4.	김영기	충남 태안	천안 중앙고	고려대 법대	27
	2014. 1.	이정호	-	대광고	연세대 법대	28
디엔에이 수사담당관	2013. 4.	배용원	경남 순천	순천고	서울대 법대	27
	2014. 1.	임현	-	광주 대동고	고려대 법대	28
정책기획과장	2013. 4.	한동훈	-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대	27
정보통신과장	2013. 4.	이정수	서울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대	26
	2014. 1.	김종필	전남 화순	담양 창평고	한양대 법대	27
수사지휘과장	2013.12.	이두봉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5
	2014. 1.	조상준	-	경성고	서울대 법대	26
수사지원과장	2013.12.	조상준	-	경성고	서울대 법대	26
	2014. 1.	이원석	-	서울 중동고	서울대 정치학	27
형사1과장	2013. 4.	배재덕	부산	부산 중앙고	부산대 법대	26
	2014. 1.	이완식	경북 영일	대구 청구고	고려대 법대	27
형사2과장	2013. 4.	강지식	전북 군산	군산고	고려대 법대	27
	2014. 1.	손영배	-	대구 경신고	연세대 법학	28
조직범죄과장	2013. 4.	유혁	-	서울 선정고	서울대 전자공학	26
	2014. 1.	심재철	전북 완주	전주 동암고	서울대 법대	27
마약과장	2013. 4.	이철희	울산	울산 학성고	서울대 불어불문	27
	2014. 1.	김후균	-	대구 경원고	경북대 법학	28
피해자인권과장	2013. 4.	심재철	전북 완주	전주 동암고	서울대 법대	27
	2014. 1.	박지영	-	광주 수피아여고	연세대 법대	29
공안기획관	2013. 4.	김창희	서울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22
	2014. 1.	조상철	서울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23
공안1과장	2013. 4.	송규중	전남 고흥	순천고	부산대 법대	26
	2014. 1.	백재명	부산	부산 동천고	서울대 법대	26
공안2과장	2013. 4.	김신	서울	마포고	서울대 법대	27
	2014. 1.	이문한	경기 포천	서울 휘문고	한양대 법대	27
공안3과장	2013. 4.	이문한	경기 포천	서울 휘문고	한양대 법대	27
	2014. 1.	배용원	경남 순천	순천고	서울대 법대	27
공판송무과장	2013. 4.	이완식	경북 영일	대구 청구고	고려대 법대	27
	2014. 1.	한웅재	-	단국대 부속고	서울대 법대	28
감찰1과장	2013. 4.	김윤상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법대	24
	2014. 1.	김훈	경북 영천	대구 영신고	서울대 법대	24
감찰2과장	2013. 4.	조기룡	부산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	26
	2014. 1.	이정현	-	나주 영산포상고	고려대 법대	27
서울고검						
공판부장	2014. 1.	이영만	전남 화순	검정고시	서울대 국문학	20

송무부장 서울중앙지검	2014. 1.	오정돈	서울	성동고	서울대 법대	20
2차장	2013. 4.	이진한	경기 화성	서울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21
	2014. 1.	윤용걸	전남 해남	서울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21
3차장	2013. 4.	박정식	대구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20
	2014. 1.	유상범	강원 영월	경기고	서울대 법대	21
형사1부장	2013. 4.	권정훈	대구	경원고	서울대 법대	24
	2014. 1.	정수봉	경북 영양	서울 인천고	서울대 법대	25
형사2부장	2013. 4.	전형근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25
	2014. 1.	이두봉	강원 양양	강릉고	서울대 법대	25
형사3부장	2013. 4.	장영수	경북 칠곡	서울 대원고	고려대 법대	24
	2014. 1.	조기룡	부산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	26
형사4부장	2013. 4.	윤장식	서울	대신고	서울대 법대	25
	2014. 1.	이주형	대구	대구 경원고	고려대 법대	25
형사5부장	2013. 4.	권순범	서울	서울 상문고	고려대 법대	25
	2014. 1.	안권섭	전북 남원	전주 완산고	연세대 법대	25
형사6부장	2013. 4.	곽규택	부산	부산 해광고	서울대 법대	25
	2014. 1.	서봉규	대구	서울 현대고	서울대 법대	26
형사7부장	2013. 4.	김형렬	전남 곡성	광주 송원고	서울대 법대	25
	2014. 1.	송규종	전남 고흥	순천고	부산대 법대	26
형사8부장	2013. 4.	김태철	전북 부안	전주 해성고	한양대 법대	24
	2014. 1.	안범진	경북 예천	동국대 부속고	한양대 법대	26
조사부장	2013. 4.	양호산	전남 강진	광주 금호고	고려대 법대	25
	2014. 1.	장기석	-	단국대 부고	고려대 법대	26
여성이동범죄 조사부장	2013. 4.	김홍창	경북 경주	김천고	성균관대 법대	24
	2014. 1.	황은영	-	대구 여고	서울대 법대	26
총무부장	2013. 4.	김동주	경남 진양	서울 중동고	서울대 법대	26
	2014. 1.	김영기	충남 태안	천안 중앙고	고려대 법대	27
공안1부장	2013. 4.	최성남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서울대 법대	24
	2014. 1.	이현철	경북 의성	대구 영신고	고려대 법대	25
공안2부장	2013. 4.	김광수	경남 고성	부산진고	서울대 법대	25
	2014. 1.	김병현	전북 부안	전주 해성고	서울대 법대	25
공공형사부장 ¹²	2013. 4.	박형철	서울	서울고	서울대 법대	25
	2014. 1.	김동주	경남 진양	서울 중동고	서울대 법대	26
공판1부장	2013. 4.	박장우	충북 충주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24
	2014. 1.	서영수	서울	재현고	고려대 법대	25
공판2부장	2013. 4.	노정연	서울	중앙여고	이화여대 법대	25
	2014. 1.	백용하	-	서울고	서울대 법대	25
공판3부장	2013. 4.	이노공	인천	서울 영락고	연세대 법대	26
	2014. 1.	김기현	대구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26
특수1부장	2013. 4.	여환섭	경북 김천	김천고	연세대 법대	24
	2014. 1.	김후곤	경남 남해	서울 경동고	동국대 법대	25
특수2부장	2013. 4.	윤대진	충남 청양	서울 재현고	서울대 법대	25
	2014. 1.	임관혁	충남 논산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회학	26
특수3부장	2013. 4.	박찬호	전남 광양	순천고	전남대 철학과	26
	2014. 1.	문홍성	전북 군산	군산 제일고	연세대 법대	26
특수4부장 ¹³	2014. 1.	배종혁	-	서울 양정고	한양대 법대	27
강력부장	2013. 4.	윤재필	울산	울산 학성고	부산대 법대	25
	2014. 1.	강해운	경북 청도	대구 경신고	한양대 법대	26
첨단범죄수사 1부장	2013. 4.	김영문	울산	부산 경남고	서울대 법대	24
	2014. 1.	서영민	경남 창녕	창원 경상고	고려대 법대	25
첨단범죄수사 2부장	2013. 4.	조재연	전남 진도	부산 기계공업고	부산대 무기재료공학	25
	2014. 1.	이정수	서울	서울 남강고	서울대 법대	26

금융조세 조사1부장	2013. 4.	강남일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대	23
	2014. 1.	장영섭	경북 영주	영주 영광고	연세대 법대	25
금융조세 조사2부장	2013. 4.	이원곤	전남 함평	서울 동성고	고려대 법대	24
	2014. 1.	김범기	서울	재현고	고려대 법대	26
금융조세 조사3부장	2013. 4.	황의수	경북 의성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대	25
	2014. 1.	이선봉	경남 고성	고성고	성균관대 법대	27
외사부장	2013. 4.	김형준	-	배문고	서울대 경영학	25
	2014. 1.	노정환	-	대구 경원고	경찰대 법대	26

서울동부지검

차장	2013. 4.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21
	2014. 1.	박윤해	경북 상주	김천고	서울대 법대	22
형사1부장	2013. 4.	배성범	경남 창원	마산고	서울대 법대	23
	2014. 1.	박성진	부산	동성고	한양대 법대	24
형사2부장	2013. 4.	허철호	경남 진주	진주고	서울대 법대	23
	2014. 1.	김재구	강원 인제	서울 경문고	서울시립대 법대	24
형사3부장	2013. 4.	김명희	강원 평창	강릉고	연세대 법대	24
	2014. 1.	이영기	전북 장수	서울 석관고	고려대 법대	25
형사4부장	2013. 4.	김충우	부산	부산 내성고	고려대 법대	24
	2014. 1.	전승수	전북 정읍	전북 호남고	서울대 경영학	26
형사5부장	2013. 4.	이현철	경북 의성	대구 영신고	고려대 법대	25
	2014. 1.	김호경	-	용산고	한국외대 법대	25
형사6부장	2013. 4.	이선봉	경남 고성	고성고	성균관대 법대	27
	2014. 1.	최창호	-	부산 동래고	한양대 법대	28
공판부장	2013. 4.	유병두	서울	대일고	연세대 법대	25
	2014. 1.	도진호	경남 산청	진주 명신고	한양대 법대	27

서울남부지검

차장	2013. 4.	박균택	광주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	21
	2014. 1.	이상호	-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대	22
형사1부장	2013. 4.	이흥락	경북 경주	부산동고	서울대 법대	23
	2014. 1.	이형택	전북 고창	전주 영생고	고려대 법대	24
형사2부장	2013. 4.	김희중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법대	23
	2014. 1.	김찬중	충북 옥천	청주 세광고	중앙대 법대	24
형사3부장	2013. 4.	김훈	경북 영천	대구 영신고	서울대 법대	24
	2014. 1.	이종환	강원 정선	서울 문일고	고려대 법대	25
형사4부장	2013. 4.	김형길	전남 영암	광주 제일고	성균관대	24
	2014. 1.	최경규	경기 화성	서울 송문고	한양대 법대	25
형사5부장	2013. 4.	서영민	경남 창녕	창원 경상고	고려대 법대	25
	2014. 1.	김관정	경북 명주	대구 영진고	고려대 법대	26
형사6부장	2013. 4.	황현덕	경남 사천	경북사대 부고	고려대 법대	27
	2014. 1.	이시원	-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28
공판부장	2013. 4.	윤춘구	충북 청주	청주 세광고	서울대 법대	26
	2014. 1.	최영운	-	마산고	한양대 법대	27

서울북부지검

차장	2013. 4.	최종원	경북 상주	대구 경북고	연세대 법대	21
	2014. 1.	이상용	-	광주 진흥고	서울대 법대	22
형사1부장	2013. 4.	안영규	경남 마산	진주고	서울대 법대	23
	2014. 1.	차맹기	경남 밀양	창원고	서울대 법대	24
형사2부장	2013. 4.	전강진	대구	경북사대 부고	고려대 법대	23
	2014. 1.	박두순	충남 서천	서울 면목고	서울대 법대	24
형사3부장	2013. 4.	김재구	강원 인제	서울 경문고	서울시립대 법대	24
	2014. 1.	윤중기	부산	부산 동인고	서울대 법대	25
형사4부장	2013. 4.	방기태	경남 밀양	밀양고	부산대 법대	25
	2014. 1.	김덕길	경남 합천	부산진고	부산대 법대	26

형사5부장	2013. 4.	서영수	서울	서울 재현고	고려대 법대	25
	2014. 1.	조호경	전남 완도	목포고	국립경찰대 법대	26
형사6부장	2013. 4.	신성식	전남 순천	순천고	중앙대 법대	27
	2014. 1.	이용일	-	광주 살레시오고	고려대 법대	28
공판부장	2013. 4.	김종형	경북 구미	대구 성광고	성균관대 법대	27
	2014. 1.	고은석	-	서울 경신고	한양대 법대	28

서울서부지검

차장	2013. 4.	윤용걸	전남 해남	서울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21
	2014. 1.	김창희	서울	서울 영일고	서울대 법대	22
형사1부장	2013. 4.	한동영	전북 순창	전주고	성균관대 법대	23
	2014. 1.	조남관	전북 전주	전주고	서울대 법대	24
형사2부장	2013. 4.	김한수 (金漢洙)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24
	2014. 1.	이성희	충남 홍성	홍성고	고려대 법대	25
형사3부장	2013. 4.	전석수	충북 청원	서울 대광고	서울대 법대	24
	2014. 1.	변창범	제주	제주 오현고	고려대 법대	25
형사4부장	2013. 4.	김병현	전북 부안	전주 해성고	서울대 법대	25
	2014. 1.	이상억	충북 음성	청주 세광고	고려대 법대	26
형사5부장	2013. 4.	김석우	대구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대	27
	2014. 1.	이근수	-	여의도고	서울대 법대	28
공판부장	2013. 4.	김홍태	광주	광주 광덕고	고려대 법대	27
	2014. 1.	주진철	-	대전 충남고	서울대 법대	28

인천지검

1차장	2013. 4.	이혁	전북 무주	경희고	고려대 법대	20
	2014. 1.	송인택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대	21
2차장	2013. 4.	권익환	-	-	-	
	2014. 1.	김희종	경남 산청	진주기계공고	부산대 법대	23
형사1부장	2013. 4.	박근범	서울	성보고	고려대 법대	23
	2014. 1.	김태철	전북 부안	전주 해성고	한양대 법대	24
형사2부장	2013. 4.	강신엽	경북 안동	안동고	서강대 정외과	21
	2014. 1.	권순철	대전	한밭고	고려대 법대	24
형사3부장	2013. 4.	이현상	서울	서울 동성고	서울대 법대	23
	2014. 1.	고민석	대구	대륜고	서울대 법대	25
형사4부장	2013. 4.	최경규	경기 화성	서울 송문고	한양대 법대	25
	2014. 1.	박찬호	전남 광양	순천고	전남대 철학	26
형사5부장	2013. 4.	조호경	전남 완도	목포고	국립경찰대 법대	26
	2014. 1.	황현덕	경남 사천	경북사대 부고	고려대 법대	27
공판송무부장	2013. 4.	백상렬	-	광주 서석고	고려대 법대	28
	2014. 1.	손석천	-	구미 금오고	조선대 법대	29
공안부장	2013. 4.	박성근	부산	부산 해광고	서울대 법대	26
	2014. 1.	박용기	충남 부여	군산 제일고	고려대 법대	25
특수부장	2013. 4.	신호철	서울	한성고	연세대 경영학	26
	2014. 1.	정순신	-	부산 대동고	서울대 법대	27
강력부장	2013. 4.	정진기	전남 담양	광주 동신고	전남대 법대	27
	2014. 1.	정규영	서울	경성고	성균관대 법대	28
외사부장	2013. 4.	임관혁	충남 논산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회학	26
	2014. 1.	주영환	경북 울진	서울 휘문고	서울대 법대	27
부천지청장	2013. 4.	황인규	서울	서울 대성고	서울대 법대	20
	2014. 1.	진경준	전남 목포	서울 환일고	서울대 법대	21
부천지청 차장	2013. 4.	이천세	충남 논산	서울 배문고	서울대 경제학	22
	2014. 1.	이영주	서울	혜화여고	서울대 법대	22

수원지검

1차장	2013. 4.	안상돈	-	서울 우신고	고려대 법대	20
	2014. 1.	김영진	경북 안동	경희고	고려대 법대	21
2차장	2013. 4.	차경환	서울	단국대 부속고	서울대 법대	22
형사1부장	2013. 4.	이정희	경북 상주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23
	2014. 1.	한상진	충남 부여	공주사대 부고	한양대 법대	24
형사2부장	2013. 4.	위재천	전남 장흥	광주 대동고	전남대 법대	21
	2014. 1.	김국일	전북 전주	-	서울대 법대	24
형사3부장	2013. 4.	최정숙	경남 진주	진주여고	이화여대 법대	23
	2014. 1.	김용정	충남 논산	대전 보문고	서울대 법대	25
형사4부장	2013. 4.	이태형	경남 산청	서울 영등포고	고려대 법대	24
	2014. 1.	정진기	전남 담양	광주 동신고	전남대 법대	27
공판송무부장	2013. 4.	이종근	-	안동고	서울대 법대	28
	2014. 1.	강종현	-	제주 제일고	중앙대 법대	29
공안부장	2013. 4.	최태원	서울	대일고	서울대 법대	25
특수부장	2013. 4.	김후곤	경남 남해	서울 경동고	동국대 법대	25
	2014. 1.	김영익	충남 논산	대전 충남고	성균관대 법대	27
강력부장	2013. 4.	장봉문	경남 남해	부산동고	동아대 법대	27
	2014. 1.	김옥환	-	공주사대 부고	한양대 법대	28
성남지청장	2013. 4.	구본진	서울	세종고	서울대 법대	20
	2014. 1.	노승권	대구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대	21
성남지청 차장	2013. 4.	김우현	전남 여천	광주 제일고	고려대 법대	22
	2014. 1.	김주원	경남 창원	서울 경북고	서울대 법대	23
여주지청장	2013. 4.	윤석열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대	23
	2014. 1.	김한수 (金漢洙)	서울	용산고	서울대 법대	24
평택지청장	2013. 4.	박경춘	전남 완도	광주 서석고	연세대 법대	21
	2014. 1.	유일준	-	영동고	서울대 법대	21
안산지청장	2013. 4.	김희재	전남 여천	순천고	연세대 법대	20
	2014. 1.	전현준	대구	서울 화곡고	서울대 법대	20
안산지청 차장	2013. 4.	안병익	강원 횡성	원주고	서울대 법대	22
	2014. 1.	김영종	강원 정선	건대 부고	한양대 법대	23
안양지청장	2013. 4.	한찬식	서울	성남고	서울대 법대	21
	2014. 1.	이명순	강원 춘천	춘천고	서울대 법대	22
안양지청 차장	2013. 4.	김경태	전남 완도	광주 송원고	서울대 법대	22
	2014. 1.	이헌상	서울	동성고	서울대 법대	23

주: 인사이동은 법무부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함. ㉠

10 동명이인이라 한자로 구분함

11 2013년 2월 서울고검검사 신규임용

12 공안3부격으로 2012년 9월 신설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13조)

13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 제4부 신설(2013.11.29.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3부

2013년 검찰 주요 수사

국가기관 정치공작
대선 개입 관련 수사

1. 국가정보원 18대 대통령선거 불법개입 수사

1. 사건 개요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가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며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음.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불법개입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후 검찰이 이어서 수사한 사건임.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대국민 심리전을 전개해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기소되었음. 검찰 특별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여 사건의 실체규명을 어렵게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려는 집권층의 수사방해 행위가 문제되었음.

2. 수사담당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2013.10.17.까지) - 부팀장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 주임검사 진재선

지검장 김수남(2013.12.부터) - 2차장 윤용결(2014. 1.부터) - 팀장 이정희 수원지검 형사1부장(2013.10.28.부터) - 김동주 공공형사부장(2014. 1.부터) - 주임검사 강범구 (2014. 3. 5. 현재 수사 중)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2.12.11.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제보를 받고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로 출동

2012.12.12. 민주당, 김하영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

2012.12.16. 경찰, 밤 11시쯤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

2013. 3.19.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명예훼손 혐의

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2013. 3.2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민주노총, 전교조, 4대 강 범대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3. 4. 1.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2013. 4.18. 검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수사결과 발표

- 김하영씨를 비롯해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민병주 심리전단장 기소중지 등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

2013. 4.1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사건 수사 총괄 위해 특별수사팀 구성, 수사 착수

2013. 4.25. 검찰, 민 전 심리전단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2013. 4.29.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

2013. 4.30.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2013. 4.30. 민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 대리해 업무방해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 등 6명 고소·고발

2013. 5.22.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2차 소환조사

2013. 5.27.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소환조사

2013. 6. 3. 검찰·법무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방침 관련 갈등설(공직선거법 적용문제) 검찰, 민 전 단장 3차 소환조사

2013. 6.14.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

- 원세훈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2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유예.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유예

2013. 6.18. 민주당, 기소유예 처분받은 이종명 전 차장·민병주 전 국장 등 5명에 대해 재정신청

2013. 9.23. 법원, 이종명 전 차장·민병주 전 국장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2013.10. 7. 검찰,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기소

2013.10.17. 조영곤 서울지검장, 지시 불이행과 보고 절차 누락 이유로 윤석열 특별 수사팀장 직무배제 명령

2013.10.18 검찰,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트위터 글 5만5689건이 추가로 드러나 원 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10.30. 재판부 공소장 변경허가)

2013.10.28.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후임으로公安통인 이정희 수원지검 형사1부장 합류하고, 정진우 수원지검 부부장 팀원으로 합류함

2013.10.28.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 않기로 결정

2013.11.20. 검찰,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 선거 관련 트위터 글 120만여 건 추가 확인, 법원에 2차 공소장 변경 신청(11.28. 재판부 공소장 변경허가)

(1차 공소장 변경 신청한 트윗글 5만5천여건 가운데 2만7천여건에 대해 입증 문제로 공소사실에서 철회)

2014. 2. 6. 검찰,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 선거 관련 트위터 글 120만여 건에서 78만여건으로 줄인 내용의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 3.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재판 진행 중 14

참

14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형사21부 이범균 부장판사

2.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의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수사

1. 사건 개요

2012년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불법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를 하였으나, 대선 직전인 16일 밤, 서울경찰청의 주도로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축소, 은폐하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 경찰은 이미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을 썼다는 사실을 선거 전에 일부 파악했음에도 이를 중간수사결과에 누락한 것임. 이에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검찰이 수사한 사건. 이후 2013년 4월 19일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당시 경찰지휘부의 외압과 수사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함.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윤석열 -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 주임검사 진재선 (고발 당시)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용걸 - 팀장 이정희 원주지청장 - 김동주 공공형사부장 - 주임검사 정진우 부부장 (2014. 3. 5. 현재 수사 중)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2. 6. 민주당, 사건 수사결과 축소·왜곡 의혹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2013. 4.22. 검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으로 고발된 김 전 청장 사건 수사 착수

2013. 5. 8. 검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참고인 조사

2013. 5.13. 수사 축소 관련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참고인 신분 조사

2013. 5.20. 검찰, 서울경찰청 청장실을 비롯해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등 수사 책임자들의 집무실 압수수색

2013. 5.21. 검찰, 김 전 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2013. 5.25. 검찰, 김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2013. 5.25. '증거 인멸 의혹'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박모 경감 소환조사

2013. 5.29.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 추가 고발

2013. 6.14.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

-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3. 6.20. 참여연대, 김 전 청장과 함께 공모하거나 실행한 최현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수사과장 등 경찰 15명¹⁵ 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3. 7.22.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 받음.

2014. 3. 현재 최현락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중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 2. 6. 김용관 전 청장에 대해 1심 무죄 선고¹⁶

2014. 3.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¹⁷

참

15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최현락, 수사과장 이병하, 수사2계장 김병찬,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장병덕,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 김○○,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 10명

16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6 형사합의 21부 이범균 부장판사

17 서울고법 2014노530 형사2부 김용빈 부장판사

3.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폭로 국정원 전·현 직원 수사

1. 사건 개요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인 김상욱씨가 국정원의 제18대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민주당에 알리고 언론사와 인터뷰하였는데 이를 국정원이 국정원직원법,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김상욱씨에게 국정원 내부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혐의로 국정원 직원 정모씨를 국정원이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음. 이에 검찰이 국정원의 전, 현직 직원을 수사한 사건임.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윤석열 -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 주임검사 진재선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이진한 - 부장 최성남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2.20. 국정원,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의혹 폭로 및 정보제공 관련해 국정원 전직 직원 김상욱씨와 현직 정모씨를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현직 정모씨를 파면함.

2013. 5. 2. 검찰, 국정원 김상욱 씨와 정모씨, 일반인 장모씨의 자택 등 압수수색

2013. 5.13. 검찰,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 소환조사.

2013. 5.14. 검찰,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 소환조사.

2013. 6.14.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

-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신상정보 누설 혐의로 국정원 직원 정모씨 불구속 기소(국정원직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정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4. 1. 2. 검찰, 김상욱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 2.20. 1심 선고¹⁸

- 김상욱씨 공직선거법 혐의 무죄, 국정원직원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 벌금 200만원
- 정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국정원직원법 위반 유죄(“원장님 지시 강조말씀” 자료 유출 부분은 무죄). 벌금 100만원

2014. 3. 현재 항소심 진행 중¹⁹

Ⓢ

18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8 형사합의27부 김환수 부장판사

19 서울고등법원 2014노814 제2형사부

4. 국정원, 박원순 제압·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수사

1. 사건 개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각 2013년 5월 15일과 19일 공개하였음.

이 자료들은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하거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학등록금 인하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공작을 기획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음.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검찰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윤석열 -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 주임검사 진재선 (처분)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용걸 - 팀장 이정희 원주지청장 - 김동주 공공형사부장 - 주임검사 강범구 (2014. 3. 5. 현재 수사 중)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5.15. <한겨레신문>이 “국정원이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원순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다”고 보도함.

2013. 5.15. 민주당 진선미 의원,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서(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공개

2013. 5.19. 민주당 진선미 의원,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문서(이른바 ‘반값등록금운동 저지 문건’) 공개

2013. 5.22.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과 ‘반값등록금운동 저지’ 문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전·현 간부와 직원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

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2013. 5.23.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사건 배당

2013. 5.28. 참여연대, 111명의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9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

2013. 5.3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함께사는 서울연대’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직원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013.10.7. 검찰, 사건을 각하 처분함.

2013.12.1. 민주당, 항고

㉔

5.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평양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새누리당은 ‘NLL 포기 발언’을 정치 쟁점화하여 대통령 선거운동에 활용하였음. 민주당은 2012년 10월 정문헌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리함.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야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대립하던 2013년 6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확인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이에 대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NLL 포기 발언’을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었음.

더불어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와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도 ‘NLL 포기 발언’ 관련 내용을 유세장과 지인 모임 등에서 언급하였고, 민주당은 이들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2차례에 걸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이후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문서로 전환하여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음(민주당 소속 의원들 수령 거부). 그러나 국정원이 회의록을 공개 전환한 것은 불법으로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상기 의원 및 새누리당 정보위원들과 열람을 허가한 남재준 국정원장·한기범 국정원 1차장을 감싸주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난을 받음.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부장 최성남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결 - 주임검사 이현철 부장 (2014. 1.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2.10. 8.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노무현 前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 한계선(NLL) 포기(양보) 발언을 했다"고 발언

2012.10.17.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

2013. 2.21. 검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²⁰

2013. 3.14. 민주당,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

2013. 5.21. 서울고검, 항고 기각

2013. 6.20.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힘.

2013. 6.21. 민주당,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과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국정원1차장을 대통령 기록물 불법 열람/공개한 혐의로 고발(공공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

2013. 6.24. 국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 공개

2013. 7. 7. 민주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²¹ 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3. 7.22. 여야, 대화록 실종 국회 운영위에 최종 보고

20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이 사건을 담당했으며 수사 지휘라인은 지검장 조영곤 - 차장 이금로- 이상호 부장- 주임검사 민기홍

21 민주당은 김무성 의원에게 대해서 2013년 6월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미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발언하여 대화록을 확보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었으며, 김 의원이 대선 기간 중 2012년 12월 부산 유세장에서 했던 NLL 관련 발언은 공개된 회의록 전문과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하다고 밝힘. 또한 권영세 대사는 2012년 12월 여의도 모음식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말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된 회의록 전문과 거의 유사하여 권 대사가 대화록을 열람했거나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세하게 내용을 받은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이 두 사람을 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힘.

2013.11. 6. 검찰, 문재인 의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관련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2013.11. 7. 검찰, 권영세 주중대사, 김무성 의원 서면조사

2013.11.13. 검찰 새누리당 김무성의원 소환 조사

2013.11.19. 검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소환 조사

2013.12.24. 검찰,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소환 조사

2014. 3. 현재 언론에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음. [참]

6.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확인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며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힘. 이에 국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기록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통과시킴. 그러나 여야의원들이 대화록 예비열람을 했으나 국가기록원에는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에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주임검사 김광수 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6.20.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힘.

2013. 6.24. 국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 공개

2013.7.2 국회, 본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 의결

2013. 7.22. 여야 열람위원단, 4차례 검색했으나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 없다고 국회 운영위에 최종 보고

2013. 7.25. 새누리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관련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3. 7.28. 검찰, 경기도 성남 대통령기록관 현장답사

2013. 8. 7. 검찰, 2차 현장답사

2013. 8.12. 검찰, 3차 현장답사

2013. 8.16.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013.10. 2. 검찰,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관 이관기록에 회의록은 없으며 '봉하 이지 원'에서 삭제본 1부 복원하고 별도의 회의록 1부 발견했다고 밝힘.

2013.10. 5. 검찰,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비공개 소환 조사

2013.10. 7. 검찰, 참여정부 당시 임상경 전 대통령 기록관리비서관 소환 조사

2013.10.10. 검찰,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던 김정호 전 비서관을 조사

2013.10.14. 검찰,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소환조사.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사

2013.10.15. 검찰,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조사

2013.11. 6. 검찰, 문재인의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2013.11.15.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힘.
-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문재인 의원 불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 3. 현재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1심 재판 진행 중 22 [참]

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설범식 부장판사

7.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1. 사건 개요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의혹을 조선일보가 2013년 9월 단독보도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였고 그 여파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함.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검찰이 집권층의 의중과 상관없이 수사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채 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되는 채 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조선일보에 제공하며 검찰의 수장인 채동욱 검찰총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논란을 터뜨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와 확산도 전 수석을 고발하자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 수사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장영수 - 주임검사 오현철 부부장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주임검사 조기룡 부장 (2014. 1. 이후)

〈형사 6부〉 채 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에 대한 수사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곽규택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서봉규 (2014.1.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9. 6.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2013. 9. 9 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2013. 9.13. 황교안 법무부 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지시

2013. 9.13. 채 총장, 사의표명

2013. 9.26.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시민단체,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광상도 전 민정 수석비서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3. 9.27 법무부, 채 총장관련 검찰(진상규명)결과 발표 및 대통령에게 사표수리 건의함.

2013. 9.28.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사건배당

2013. 9.30. 채 총장 퇴임. 채동욱 전 총장,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취하

2013.11.20. 검찰, 개인정보 불법조취 혐의로 서초구청 조모 행정지원국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 사무실 압수수색

2013.11.28. 검찰, 원세훈 측근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 소환 조사

2013.12.13. 검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 지원국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4. 1. 4. 국정원, 국정원 정보관이 채동욱 전 총장 혼외아들 소문을 듣고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다고 시인함.

2014. 1. 9. 검찰,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초구청 김모 팀장을 소환 조사

2014. 1.13. 검찰, 서울 서초구청 2차 압수수색

※ 참고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조취 사건 수사와 별개로,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고발한 채동욱에 대한 명예훼손, △가정부 협박 주장에 대한 진정사건, △개인적 금전관계 관련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2013. 9.26. 범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가 채동욱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임모씨를 검찰에 고발

2013.12.3.~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두 차례에 걸쳐 임모씨를 임씨 집에서 같이 살던 가정부 이모씨에 대한 공갈, 협박한 혐의로 소환조사²³

2014. 1. 8.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임씨의 자택과 임씨가 임시로 머물렀던 경기 가평군의 친척 집을 압수수색함.²⁴

2014. 2.23.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이 실제 혼외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군의 모친인 임모씨의 분만기록이 보관된 병원을 압수수색

◻참

23 가정부 이모씨가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 이모씨가 임씨에 대한 진정서를 검찰에 내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됨.

24 임씨의 개인적인 금전 관계(임씨가 특정 사건의 진행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관련된 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알려짐.

선거법 관련 수사

8. 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제18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안도현 시인이 대선 직전 본인의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물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물 도난에 관여해 있다”는 글을 올림. 이에 대해 한 대학생이 안도현 시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진정을 내어 검찰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전주지검 형사1부

지검장 이영렬 - 차장 최윤수 - 부장 윤영준 - 주임검사 최재준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3.22. 검찰, 안도현 시인 소환 조사

2013. 6. 4. 검찰, 안도현 시인 2차 소환 조사

2013. 6.13. 검찰, 안도현 시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3.10.29. 1심 재판의 배심원단 전원 무죄선고²⁵, 재판부 선고 연기

2013.11. 7. 1심 재판부 일부무죄 선고. 안도현 시인에게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

2014. 3.25. 항소심. 전부 무죄 선고²⁶

25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은택 재판장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됨)

26 광주고법(전주) 2013노237 전주부 제1형사부 임상기 재판장

9. 전공노·전교조 대선개입 혐의 고발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자유청년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난 18대 대선 기간에 불법선거운동을 했으며 전공노와 김종남 전공노 위원장을 고발하였음. 자유청년연합은 전공노가 2013년 12월 7일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 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등의 글을 올려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함. 더불어 자유청년연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홈페이지, 지부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고 검찰에 고발했음.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물타기'성 고발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검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임.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박청수 - 차장 박균택 - 부장 황현덕²⁷

지검장 이영렬 - 차장 이상호 - 부장 이시원 (2014. 1.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10. 29 자유청년연합, 전공노와 김종남 전공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3. 11. 13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 전교조를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3. 11. 8 검찰,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2013. 11. 14 검찰,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2차 압수수색

2013. 11. 15 검찰,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3차 압수수색

²⁷ 서울남부지검에 참여연대가 사건 수사지휘라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2014. 3.14.). 기재된 지휘라인은 법무부 인사발표 자료와 기사검색으로 찾은 것임.

2013. 12. 9. 검찰,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2014. 3. 현재 수사 중

참

10.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가족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인 탄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검찰이 수사한 사건.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 시사IN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고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지만씨 등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고소당했음.

또한 검찰은 주진우 기자가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얼추 따지면 10조가 넘어간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서독 방문 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²⁸로 함께 수사하였음.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부장 최성남 - 주임검사 이진령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2.12.13.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가족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로 주진우 기자, 김어준 총수 고발

2013. 4. 5. 검찰, 주진우 기자 소환 조사

2013. 5.15. 법원, 주진우 기자 사전구속영장 기각

²⁸ 박지만씨가 허위사실로 박정희 전 대통령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1년 11월 주 기자에게 3억원을 청구하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으며,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3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배호근 부장판사)에서 주 기자가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함.

2013. 6.13. 검찰, 주진우, 김어준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자(死者)명예훼손)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3.10.23. 1심 선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²⁹

2014. 3.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³⁰

참

29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69 형사합의27부 김환수 부장판사

30 서울고법 2013노3469 제6형사부 정형식 부장판사

부패 관련 수사

11. CJ 이재현 회장 탈세 및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수사

1. 사건 개요

재벌 및 사회 저명 인사들의 조세도피처를 활용한 역외 탈세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역외 탈세에 대해 수사한 사건임. 아울러 이재현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J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2006년에 전군표 당시 국세청 차장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돼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함.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조영곤 - 3차장 박정식 - 부장 윤대진 - 주임검사 신봉수 부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5. 금융정보분석원(FIU),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흐름 포착해 검찰 통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내사 착수³¹

2013. 5.21. 검찰,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로 CJ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2013. 5.2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13. 5.28. 검찰,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홍콩·싱가폴 사법당국에 CJ그룹 해외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

2013. 5.29. 이재현 회장 자택 압수수색

2013. 6. 6.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6.8 구속)

2013. 6.25. 이재현 CJ그룹 회장 소환조사 (7.1 구속)

2013. 6.27. 신동기 부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31 이미 검찰은 2008년에 ‘CJ그룹 재무팀장 살인청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 관련 정보가 담긴 자료(USB)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2013. 7.18.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2013. 7.27. CJ그룹 임원들한테 골프 접대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송광조 서울지방 국세청장 소환조사,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2013. 7.30. 전군표 전 국세청장 자택 압수수색

2013. 8. 1.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 사퇴

2013. 8.13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각각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방조 혐의(뇌물 전달)로 구속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이재현, 신동기>

2014. 2.14. 1심³² 이재현 회장 징역 4년 벌금 260억원 선고, 신동기 부사장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2014. 3.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

<전군표, 허병익>

2013.11.15. 1심³³,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60만원 선고,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 선고

2014. 2. 6. 2심³⁴, 전 전 청장에 대해 징역 3년6월, 추징금 3억1850만원 선고

2014. 3. 상고심 재판 진행 중³⁵

참

32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710 형사합의24부 김용관 부장판사

33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30 형사합의22부 이정석 부장판사

34 서울고법 2013노3613 형사3부 임성근 부장판사

35 대법원 2014도2185

12.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수사

1. 사건 개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중학동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여 한국일보에 200억원 가량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장 회장을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검찰 수사 결과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보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회사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되었음.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권순범 - 주임검사 유지열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4.29. 한국일보 노조, 장재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3. 5. 8. 검찰, 정상원 한국일보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

2013. 7.17. 검찰, 장재구 회장 소환조사

2013. 7.19. 한국일보 노조, 장재구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

2013. 8.23. 검찰, 45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장재구 회장 구속 기소. 장 회장을 도운 한국일보 및 서울경제신문의 전·현직 임원 3명도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 2.11. 1심 선고 ³⁶

- 장재구 회장 유죄, 징역 3년
- 신모 전 한국일보 상무, 장모 서울경제 감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 노모 서울경제 상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2014. 3.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³⁷

참

36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872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

37 서울고법 2014노620 형사3부

13. KT 이석채 회장 배임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참여연대가 2013년 2월 KT가 IT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석채 KT회장을 검찰에 고발함. 참여연대는 2013년 10월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이 회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회장을 추가 고발하고, 이를 검찰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지검장 최교일 - 1차장 변찬우 - 부장 이현상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양호산 (2013. 4. 이후)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주임검사 장기석 부장 (2014. 1.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2.27. 참여연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함(스마트애드몰사업 관련 배임, 오아씨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관련 배임, 사이버엠비에이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

2013. 3.14. 검찰, 고발인 자격으로 참여연대 관계자 소환 조사.

2013.10.10.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추가고발(KT 사옥 39곳 저가 매각 등 배임 혐의)

2013.10.22. 검찰, KT 본사와 계열사 등 총 16곳 1차 압수수색

2013.11. 1. 검찰, KT 사옥과 임직원 5~6명의 주거지 등 8곳 2차 압수수색

2013.11.11. 검찰, KT 사옥과 관계사 및 임원 주거지 등 13곳 3차 압수수색

2013.11.11. 미래창조과학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무궁화위성 2, 3호를 홍콩업체에

불법매각한 의혹과 관련하여 이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3. 11.12. 이석채 회장, 회장직 사퇴

2013.12.19.~27. 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 4차례 소환 조사

2014. 1. 9. 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2014. 3. 현재 수사 중



14. 동양그룹 부실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여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건. 검찰 수사 결과, 현 회장과 그룹 고위임원들은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6천여억원을 부당지원하는 등 배임 뿐 아니라 분식회계 등의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음.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김수남 - 3차장 유상범 - 주임검사 김후곤 부장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9.23. 금융감독원, 동양증권에 대해 특별 점검 실시

2013.10. 6. 금융감독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무기한 특별검사로 진행

2013.10. 7. 경실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2013.10. 8. 동양증권 노동조합,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 금융소비자원,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

2013.10.14.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금감원 및 금융위 감사원 감사청구

2013.10.15. 검찰, (주)동양과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들과 현재현 회장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2013.10.17.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

2013.10.23. 검찰, 김모 동양자산운용 대표와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 김모씨 등 소환 조사

2013.10.25. 투기자본감시센터, 사기성 CP(기업어음) 발행 의혹과 관련 현재현 동양

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임직원 8명을 검찰에 고소·고발

2013.10.25.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2013.11. 4.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 투자자들,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2013.11.21. 경실련, 동양그룹 계열사 경영진 39명 배임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

2013.11.22.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소

2013.12. 9. 검찰,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소환 조사

2013.12.16. 검찰, 현재현 회장 1차 소환조사

2013.12.17. 검찰, 현재현 회장 2차 소환조사

2013.12.19. 검찰, 현재현 회장 3차 소환조사

2013.12.26. 동양사태진실규명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현승담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정진석 동양증권 대표이사·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소·고발

2014. 1. 8.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재현 회장 고발. 계열사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동양그룹 김윤희 전략기획본부장과 동양파이낸셜대부 김성대 대표이사 고발

2014. 1.28. 검찰, 동양그룹 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 현 회장에게는 수백억원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배임)와 자신의 채무 담보로 계열사 주식을 제공한 혐의(횡령), 그리고 자산과 매출액의 과다 계상을 통한 회계부정 혐의도 추가됨.
- CP 발행과 매입 등 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그룹 전직 임원과 계열사 대표 등 7명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 3.27. 첫 공판³⁸



3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위현석 부장판사

15. 효성그룹 탈세 수사

1. 사건 개요

서울지방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효성이 1997년부터 1조원 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 고동윤 상무와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이진한³⁹ - 부장 윤대진 - 주임검사 조용한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9.30. 서울지방국세청,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 고동윤 상무와 효성 법인을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3.10. 1.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국세청 고발 건 배당

2013.10. 7.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2013.10.11. 효성그룹 본사와 조석래회장 자택, 효성캐피탈 본사 등 10여곳 압수수색

2013.10.14. 고동윤 상무를 비롯해 효성그룹의 회계·재무담당 임직원 소환조사

2013.10.18. 효성그룹 임직원 명의의 금융계좌 210여 개 확보, 계좌추적 실시, 경기도 광주시 소재 효성그룹 소유 냉동창고 압수수색

2013.10.30. 싱가포르와 홍콩 현지 법인의 전·현직 법인장들을 소환 조사

2013.11.13.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 소환 조사

2013.11.27. 이상운 부회장 소환조사

2013.11.28.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소환조사

³⁹ 특수부는 3차장 소관인데 서울중앙지검에 최종 처분에 관련한 지휘라인을 정보공개청구하니 이진한 2차장으로 회신 받음. 당시 박정식 3차장은 12월 19일자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발령 남.

2013.11.29. 조현준 사장 재소환조사

2013.12.10. 조석래 회장 소환조사

2013.12.11. 조 회장 재소환조사

2013.12.13.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2014. 1. 9. 검찰, 조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 조석래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조현준 사장을 증여세 70억 원을 포탈하고 효성의 법인자금 16억 원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상운 부회장과 김모 전략본부 임원은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노모 지원본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 3. 현재 재판 진행 중⁴⁰

참

40 서울중앙지법 2014고합20 형사합의28부 김종호 부장판사

16. 원전 비리 수사

1. 사건 개요

“신고리 1, 2호기에 설치된 제어케이블(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호를 주는 안전 장치)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접수되자, 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교체를 요구하였고 한수원은 이후 부품검 증 업체인 새한티이피와 납품업체인 JS전선 등을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조작 관련 비리 사건과 △납품 관련 비리(뇌물 수수 등) 사건, △인사청탁 비리 사건 등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납품 관련 비리 및 인사청탁 비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경북 영일, 포항 지역 출신 (이른바 ‘영포라인’) 인사 중 핵심인물인 브로커 오희택씨가 연루되어 있었음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짐.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⁴¹

단장 김기동 동부지청장 - 부단장 이기석 차장 - 팀장 최성환 형사3부장

* 검사 9명(부산동부지청 5명, 부산지검 2명, 울산·광주지검 각 1명)과 수사관·실무관 41명(부산동부지청 31명, 대검 5명, 부산지검 4명, 울산지검 1명) 총 53명으로 구성 됨.

* 2014년 1월부터 양부남 동부지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수사단 새롭게 구성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5.28. 한수원, 대검에 JS전선 전 대표이사 황모씨, 새한TEP 대표이사 오모씨, 새한TEP 전 직원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41 수사대상이 늘어나면서 2013. 7. 8. 수원, 인천, 서울서부, 대전, 울산, 창원, 광주 등 7개 검찰청에 도 사건 배당, 수사팀 확대

2013. 5.29. 검찰,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 설치

2013. 5.30. 시험업체인 새한TEP와 제조업체인 JS전선 압수수색

2013. 6. 5. 승인기관인 한국전력기술 압수수색

2013. 6.18. 새한TEP 이모 팀장을 원전 제어용 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2013. 6.20. 한수원 본사와 고리·월성본부 등 9곳 압수수색

2013. 6.24 JS전선 업 전 상무와 문 전 대리를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

2013. 7. 1. 검찰, 한전기술 간부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3. 7. 4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체포, 자택 압수수색

2013. 7. 8. 대검, 한수원의 추가 수사 의뢰를 수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서부지검, 대전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 등 7개청에 배당

2013. 7. 8. 검찰, 한수원 송모 부장 등 신고리 1,2호기 등 제어용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2013. 7.10. 현대중공업 본사 압수수색

2013. 7.24.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2013. 7.24. 수원지검 등 7개청, 한전KPS 등 납품업체 31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

2013. 7.30.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

2013. 7.30. 검찰,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수원 송모 부장 추가 기소

2013. 8.14. 검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납품계약에 편의를 받은 대가로 한수원 송모 부장에게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정모 전 현대중공업 총괄상무 구속기소

2013. 8.14. 사기 혐의로 LS전선의 조모 전 차장과 전 직원 황모씨 불구속 기소

2013. 8.16. 검찰, LS전선 본사압수수색

2013. 8.27.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소환

2013. 8.22. 검찰, 브로커 이윤영(전 한나라당 고위당직자) 구속 기소(한국정수공업에 대한 원전설비 수주 알선 및 청탁 명목으로 '영포라인' 브로커 오희택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당시 국무차장이던 박 전 차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

2013. 8.30. 검찰, 브로커 윤영씨(전 국정원 비서실장) 구속 기소 (영포라인 브로커 오히택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최종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청탁을 성사시킨 뒤 금품을 받은(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2013. 8.16. LS전선 본사 압수수색

2013. 8.21. 검찰, 한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수처리 설비 공급 관련 청탁과 함께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1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영포라인' 브로커 오히택 구속 기소

2013. 8.27.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소환조사

2013. 8.27. 원전 설비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기철 전 한수원 발전본부장(전무) 구속 기소

2013. 9. 2. 검찰, 이종찬 한국전력 부사장 불량 부품을 원전에 납품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사기, 배임수재,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

2013. 9.10.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총 97명 기소(구속 43명, 불구속 54명)
-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관련 비리(구속기소 22명, 불구속기소 35명), △원전 부품 납품 비리(17명 구속기소, 18명 불구속기소), △인사 관련 비리(4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등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구속 중)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최종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무혐의 처리

2013. 9.14. 검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추가기소

2013. 9.14. 검찰, 원전업체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송모 부장 추가 기소

2013.11.24. 검찰, 한국정수공업 이모 회장으로 부터 경영권 방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모 전 산은캐피탈 투자실장 구속기소, 최씨한테 금품을 건넨 한국정수공업 이모 회장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4. 재판 결과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관련 비리>

2013.12. 6. 1심 선고 42

- JS전선 엄모 고문 사문서 위조 등 유죄, 징역 12년
- 송모 한수원 부장,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
- 김모 전 한전기술 처장,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공모한 혐의로 징역 5년
- 김모 JS전선 부장,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공모한 혐의로 징역 5년
- 한수원 황모 차장, 원전업체로부터 5천만원 받은 혐의로 징역4년 추징금600만원
- 새한TEP 대표 오모씨, 징역 4년 선고
- 새한TEP 이모 차장·한전기술 이모 부장·전모 부장, 제어 케이블 성적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3년이 각각 선고
- JS전선 문모 전 대리·최모 대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각각 선고

<원전 부품 납품 비리>

2013. 9.27. 1심 43

- 한수원 박모 차장,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1천만원, 추징금 1500만원
- 박 차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A사 정 대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선고

2013.12. 6. 1심 44

- 황모 전 JS전선 대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

2014. 1.10. 1심 45

- 한수원 송모 부장, 뇌물 수수 혐의 유죄로 징역 15년, 벌금 35억원, 추징금 4억 3050만원 선고

42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43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44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45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중 4명, 징역 2년~3년 6월 선고. 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14. 1.17. 1심⁴⁶

-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 유죄, 징역 3년 6월, 추징금 1억3천만 원 선고
- 박 전 전무에게 3천만 원을 건넨 I사 대표 임모씨 유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

2014. 2.14. 1심⁴⁷

- 브로커 오희택 유죄.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7억8천만원 선고

2014. 2.20. 1심⁴⁸

-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유죄(일부무죄).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 선고
- 이윤영 전 한나라당 대변인 유죄(일부무죄). 징역 2년, 추징금 3억원 선고

<인사 관련 비리>

2014. 2.14. 1심⁴⁹

- 브로커 윤영 유죄.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억여원
- 이종찬 전 한국전력 부사장 유죄. 징역 1년6월, 벌금 4400만원, 추징금 3600만원

2014. 2.20. 1심 선고⁵⁰

46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47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48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49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50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유죄. 징역 7년,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 7000만원 선고
- 원전 설비업체 송모 대표 유죄. 배임증재와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참

17. 4대강 사업 관련 건설사 담합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⁵¹'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를 시작으로 총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사업이었음.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과 야당의 비판,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여 부실공사, 담합, 비자금 조성 등 여러 비리 의혹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담합건과 관련하여 이미 200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과정에서 “(4대강 턴키 공사의) 입찰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 담합 의혹이 짙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같은 달 공정위가 담합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실제 2012년 6월에서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1115억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고발조치 하지 않음.⁵² 시민사회단체의 비자금 의혹 및 입찰 담합 관련 고발과 끊임없는 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3년에서야 시작되었음.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조영곤 - 3차장 박정식 - 부장 여환섭 - 주임검사 이영상 부부장 (처분)

지검장 김수남 - 3차장 유상범 - 부장 김후곤 - 주임검사 김형근 부부장 (2014. 3.

5. 현재 수사 중)

51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친환경 보와 댐, 저수지 등을 만들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사업 목표로, 노후 제방 보강 및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음. 시민단체들은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비판하였고 실제,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2013. 7.10.) 밝혀졌음.

52 이후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13. 7.), 공정위가 4대강 사업의 입찰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담합 처리도 타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음.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2. 6. 8.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혐의로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 16명을 검찰에 고발함.

2013. 5.15. 검찰, 건설사 등 총 30여 곳 압수수색

2013. 5.20. 검찰, 대림산업 2차 압수수색, 4대강 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소형 설계업체 2곳을 압수수색

2013. 5.30. 검찰, 16곳의 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2013. 5.31. 검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소환조사

2013. 6.11. 검찰, 설계업체 등 6~7곳 압수수색

2013. 9.14. 검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2차 소환조사

2013. 9.24. 검찰,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수사결과 발표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11개 건설사⁵³ 및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⁵⁴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 2. 6. 1심 선고 ⁵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등)

-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7500만원을, 입찰담합에 가담한 포스코건설과 삼성중공업, 금호산업과 쌍용건설은 벌금 5000만원 선고

53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54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16명은 불구속 기소되고, 6명은 구속기소됨.

55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998 형사합의29부 천대엽 부장판사

2014. 3. 현재 피고인 일부(14명) 2심 재판 진행 중

※ 참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 외에, 4대강 사업 관련 사건으로는

△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들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와 뇌물제공 사건

△ 4대강 사업 담합 적발 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4대강 담합 건설사에 고의적으로 낮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⁵⁶

△ 공정위의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를 김기식 국회의원실에 제보한 공정위 직원에 대한 공정위의 수사의뢰 사건⁵⁷

△ 공정위의 내부제보자 색출 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⁵⁸

△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사건⁵⁹

이 있음. 아래는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들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와 뇌물제공 사건의 진행현황임.

2012. 9.11.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참여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대강 사업과정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포함 6명 고발

2012.10. 8.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대강 사업과정 비자금 조성 혐의로 김종겸, 김창희 등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총 12명 고발(배임, 조세포탈,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56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가 2012년 6월 8일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재찬 부위원장,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을 고발하고 2012년 9월 6일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입찰담합업체의 과징금을 경감 해줬다며 공정거래위원장과 담당 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함.

57 공정위가 2012년 9월 말 수사의뢰했다고 언론보도됨.

58 4대강복원범대위가 2012년 9월 25일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고발함.

59 통합진보당이 2013년 7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장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태균 전 조달청장 5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함.

2013. 7.31. 검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소환조사

2013. 8.22.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의 계열사 건화와 건설용역·기술 임대업체인 한조 등 2곳을 압수수색

2013. 8.26. 검찰, 도화엔지니어링이 매년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 2010년~2013년 기간 중 400억원대 회사자금 횡령 및 회계 분식 혐의로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김영운씨를 구속기소(2014. 2. 7. 1심 선고⁶⁰ - 회사자금 421억을 횡령한 혐의 가운데 11억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2013. 8.27. 검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

2013. 9. 2. 검찰, 23억원의 비자금 조성하여 횡령하고 서울시 턴키공사 심의위원 3명에게 2억5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제)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를 구속기소(2014. 1.24. 1심 선고⁶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 9. 3. 검찰,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장석효 사장 소환조사

2013. 9.30.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구속기소(2014. 1.28. 1심 선고⁶²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징역 3년6월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만원)

2014. 2.21. 검찰, 참여연대 등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등을 고발(2012.9)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이관함.

Ⓢ

6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위헌석 재판장

6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조용현 부장판사

6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용현 부장판사

18.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2011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은 매입과정이 대통령 일가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준 반면, 국가예산을 유용한 것이라는 점과 이시형씨가 부지매입에 쓴 자금의 출처 의혹이 있어, 2012년 검찰이 수사하고 특검이 재수사하였던 사건임. 하지만 청와대의 특검 수사 방해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거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제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고 주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음. 이에 2013년 3월 이명박 대통령 퇴임 직후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수사할 것을 요청하며 고발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지검장 최교일 - 1차장 변찬우 - 부장 박은재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곽규택 - 주임검사 김양수 부부장 (2013. 4. 이후)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부장 서봉규 - 주임검사 정옥자 부부장 (2014. 1.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3. 5.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김윤옥, 이시형씨 고발

- 이명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형법 123조 위반(직권남용)
- 김윤옥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 이시형 : 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2013. 3. 6. 검찰, 형사1부에 사건 배당. 이후 특검 전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과 통합하기 위해 형사6부로 재배당함.

2013. 8. 2. 참여연대, 수사 상황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서 보냄.

2013. 8. 7. 검찰, “계속 수사 중”이라고 수사 중간 통지문을 고발인(참여연대)에게 보냄.

2013. 8.30. 검찰, 고발인 조사(형사6부에 재배당된 것으로 확인)

㉔

19.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횡령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2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 재직 시 매월 300~500만원 씩, 총 3억2천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사실이 밝혀져, 참여연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지검장 최교일 - 1차장 변찬우 - 부장 차맹기 - 부부장 김효봉

지검장 조영곤 - 1차장 윤갑근 - 부장 권순범 - 주임검사 유지열 (2013. 4. 이후)

지검장 김수남 - 1차장 신유철 - 주임검사 안권섭 부장 (2014. 1.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2. 6. 참여연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2013. 2.11.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사건 배당

2013. 2.15. 검찰, 고발인(참여연대) 조사

2013. 8. 2. 참여연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 앞으로 질의서 발송

2013. 8. 9. 검찰, “계속 수사 중”이라고 수사 중간 통지문을 고발인(참여연대)에게 보냄.

참

20. 김재철 MBC 사장 배임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김재철 MBC 사장이 2010년 취임 이후 명품 가방과 귀금속 구입, 호텔 이용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삿돈 6억9천만원을 사용하고, 무용가 정모씨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7년 동안 20억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 등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검찰에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임. 애초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함. 감사원도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벌일 당시 김재철 사장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함.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이영렬 - 차장 박균택 - 부장 황현덕 - 주임 나창수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2. 3. 6. MBC 노조,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영등포 경찰서 접수

2012. 4.25. 노조,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정모씨에게 특혜 제공한 혐의로 추가 고발

2012. 5.29. 노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고발

- 김 사장이 무용가 정모씨와 충북 오송시에 8억원 대의 아파트 3채를 구매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 채는 김 사장 명으로 계약,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 정씨의 오빠를 규정에 없는 특별 채용으로 MBC에 연간 1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

2013. 1. 9. 경찰, MBC 노조에 김재철 사장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공문 보냄.

2013. 2. 1. 감사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거부로 김재철 사장 고발

2013. 2.15. 검찰(남부지검), 김재철 전 사장 소환 조사

2013. 3.26.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

2013. 3.27. 검찰, 전주, 청주, 안동 MBC 등 지역 방송사에 김 전 사장의 배임혐의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힘.

2013. 9. 4~5. 김재철 사장 소환조사

2013.12.31. 검찰, 김재철 사장에 대해 일부 업무상 배임(배임금액 1,100여만원),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 약식 기소함.

- 업무 관련 사용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무용가 정모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

2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초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회 고위층 인사 성접대 의혹이 퍼지는 중, 경찰이 관련 사건을 내사 중임을 공개하고, 윤중천씨의 성접대 고위 인사 중 김학의 차관이 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됨. 그 여파로 2013년 3월 15일에 차관으로 취임한 김 차관은 6일 만에 차관직에서 사퇴하고, 김 전 차관을 기소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경찰로부터 7월에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경찰에 이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⁶³

지검장 조영곤 - 3차장 박정식 - 부장 윤재필 - 주임검사 김수민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3.13. 정부,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

2013. 3.14.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강원도(원주)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인사들 성접대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 언론보도됨.

2013. 3.15. 김학의 법무부 차관 취임

2013. 3.18. 경찰청 특수수사과, 윤중천씨의 사회 고위층 인사 성접대 의혹 내사 착수 사실 공개

2013. 3.2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로 일부 언론이 실명 거론

2013. 3.21.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표

2013. 3.31. 경찰, 원주 별장 등 압수수색

2013. 5. 9. 윤중천씨, 경찰에 자진 출석

63 경찰 수사 지휘는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에서 진행, 사건 송치 후엔 강력부에 배당됨.

2013. 5.14. 경찰, 윤중천씨 2차 소환조사

2013. 5.21. 경찰, 윤중천씨 3차 소환조사

2013. 6. 7. 경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2013. 6.19. 검찰, 경찰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체포영장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

2013. 7.10. 경찰, 윤중천씨 구속

2013. 7.18 경찰, 윤중천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 1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함.

2013. 8. 6. 검찰(강력부), 윤중천씨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구속 기소

2013. 11. 2.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소환조사

2013. 11. 7. 검찰시민위원회 소집(검찰시민위원 11명 전원이 불기소 적정의견 제시)

2013. 11.11. 검찰,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 성접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 윤중천 씨 배임증재·명예훼손·협박 혐의로 추가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 1.24. 법원, 윤중천씨에 대해 협박죄, 명예훼손죄 공소 기각(피해자와 합의), 배임 중죄 벌금 500만원 선고⁶⁴

2014. 2.18.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⁶⁵

참

6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용현 부장판사

65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부장판사

노동, 민생 침해 관련 수사

22.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 수사

1. 사건 개요

남양유업이 2008년부터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초과해 발주하여 대리점에 강매하는 ‘부당 밀어내기’를 하고 이에 항의하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폭언을 일삼고, 떡값 요구, 마트 판촉사원 임금 대리점에 떠넘기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피해 대리점주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소,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지검장 조영곤 - 차장 윤갑근 - 부장 박규택 - 주임검사 고진원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1.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공정거래위원회에 남양유업을 고발함.

2013. 4.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김 웅 대표, 이모 서부지점장 등 임직원 10명 사전자기록변작,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

2013. 5. 대리점주 10여명, 마트 판매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며 홍 회장과 4개 영업 지점 직원 30여명 검찰에 추가 고소

2013. 5. 2. 검찰, 서울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서부지점, 물류센터 등 3곳 압수수색

2013. 6.17. 검찰, 김웅 대표 소환조사

2013. 6.19. 검찰, 홍원식 회장 소환조사

2013. 7. 8. 공정위, 남양유업의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 123억원의 과징금 부과,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힘.

2013. 7.18. 남양유업과 피해 대리점주, 밀어내기 피해 보상과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한 협상 타결, 대리점주 고소 취하(검찰,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 지속)

2013. 7.22. 검찰, 수사 결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업무 방해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 불구속 기소
-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파트장, 직원 등 22명을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로 3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약식기소
- 남양유업 법인, 법이 정한 최고한도인 2억원의 벌금에 약식기소
- 홍원식 회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보고받거나 개입한 단서 없어 무혐의 처분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 1.24. 남양유업 법인에 벌금 1억2000만원 선고⁶⁶

2014. 1.28. 법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무고죄 무죄 선고⁶⁷

- 김웅 대표이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 곽주영 영업총괄본부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등 ⁶⁸

참

66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위현석

67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위현석

23.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개입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수사

1. 사건 개요

2011년 5월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용역 폭력이 행사된 후 2012년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직장폐쇄, 용역 투입, 노조원 탈퇴 유도, 친기업적 복수노조 설립 등 노조 무력화 방안을 자문하고 이를 기업이 실행한 사실이 밝혀짐. 이에 전국금속노조가 검찰에 고소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 외에도 에스제이엠,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등의 회사들과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 파괴에 나섰다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대전지검 천안지청⁶⁹

지청장 송인택

- *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수사 : 대구지검 경주지청
- * 상신브레이크 : 대구지검 서부지청
- * 보쉬전장 : 대전지검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 5.18. 사용자 불법 공격적 직장폐쇄, 유성기업 지회 파업 돌입

2012. 9.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에서 은수미 의원 등이 지난 지난 7년 간 창조컨설팅이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4개 노조 파괴에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 현대차의 개입, 청와대·국가정보원·경찰·노동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정황도 폭로. 고용노동부, 창조컨설팅 감사 착수

69 유성기업과 보쉬전장의 수사지휘는 대전지검의 전현준 차장검사가 한 것으로 언론 보도됨.

2012. 9.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등 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2.10. 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희), 창조컨설팅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 착수했다고 밝힘.

2012.10.16. 고용노동부, 징계위원회 열어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의 노무사 등록 취소 결정

2012.10.18.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이첩 받은 서울남부지검과 고용노동부, 서울 문래동에 있는 창조컨설팅 사무실과 계열사 3곳 압수수색

2012.10.19. 고용노동부, 창조컨설팅 설립인가 취소

2012.10.21. 고용노동부,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공인노무사 면허취소

2012.10.23. 전국금속노조,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발레오만도·보쉬전장·만도 대표 등 31명을 부당노동행위(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

2012.11.14. 검찰, 유성기업 아산, 영동공장 압수수색

2012.12.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유성기업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 의견 검찰 송치

2013. 2.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재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검찰, 보강수사 요구

2013. 3.21.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연대체인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검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13. 8. 6.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3차 수사결과 검찰 송치(대부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

2013.10.24. 국회 법제사법위 야당위원들,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유성기업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 비판

2013.12.30. 검찰,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일제히 불기소 처분

2014. 1.21. 전국금속노조, 항고

Ⓢ

24. 이마트의 직원 불법 사찰,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 수사

1. 사건 개요

민주통합당 장하나, 노웅래 의원의 폭로로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비노조 경영원칙에 따라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노동단체 가입 여부를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성향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며 노조 설립에 적극적인 직원의 경우에는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조·시민단체 등이 고소,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한 사건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조영곤(2013.11.25.까지) - 2차장 이진한 - 부장 김광수 - 주임검사 박하영

3. 수사 경과 및 결과⁷⁰

2013. 1.16. 민주통합당 장하나, 노웅래 의원, 이마트의 내부 문건 공개하며 사측의 직원 불법 사찰, 노조 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폭로

2013. 1.17. 고용노동부,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17일~25일 실시

2013. 1.28. 고용노동부, 이마트 특별감독 24개 지점으로 확대, 기간 2월 15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힘.

2013. 1.29. 장하나 의원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위반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겸 이마트 대표이사 등 이마트 임직원 19명을 검찰에 고소, 고발함.

70 2014년 1월 27일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같은 혐의로 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음

2013. 2. 5. 검찰, 정용진 부회장 소환조사

2013. 2.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 이마트 본사와 지점 6곳, 노무 컨설팅업체 2곳, 일부 이마트 직원의 거주지 등 13곳 압수수색

2013. 2.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마트 본사 인사팀 압수수색

2013. 6.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용진 부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13. 7.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병렬 당시 이마트 대표이사, 윤모 당시 인사담당 상무 등 임직원 14명, 노무 관련 자문협력사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는 무혐의 의견)

2013.12.22. 검찰, 수사 결과

- 이마트 노조원들을 미행·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 불구속 기소
- 그 외 과장급 이하 직원 9명 기소유예 처분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함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 3. 현재 재판 진행 중⁷¹

참

7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우수 부장판사

25.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의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 시스템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정비 업무를 하던 협력업체 (주)STI서비스 직원 박모씨가 불산액 과다 흡입으로 사망하고 4명이 전신화상의 상해를 입음. 이후 5월에도 11라인에서 배관교체 공사 중 불산 누출 사고 재발로 (주)성도이엔지 직원 3명이 부상당함. 이에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해 인명피해를 낸 데 대해 업무상과 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한 경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 사건

2.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수원지검 공안부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차경환 - 부장 최태원 - 주임 최두헌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1.28. 불산 가스 누출로 유독물질 관리 하도급업체 STI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전신화상의 상해를 입음.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은폐 의혹 제기됨.

2013. 2. 4.~25.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특별감독 실시

2013. 2. 6. 다산인권센터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은폐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법인과 권오현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고발

2013. 2.19.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화성사업장이 불산 누출 사고 당시 배풍기를 이용해 불산가스를 외부로 뱉낸 사실을 확인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별도 수사에 나섬.

2013. 2.26. 경기지방경찰청,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불산 누출 사고는 낡은 설비와 고장난 기기를 상당기간 방치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됨
- 삼성전자 화성공장 전무 최모씨, 부장, 팀장 등 삼성전자 안전관리책임자 3명과 공장 내 불산탱크를 관리·보수하는 협력업체 STI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4명 등 모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불산 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 태만으로 불산 누출 주의 및 신고, 조치 의무 등을 위반) 혐의로 입건. 숨진 협력업체 직원 박모씨도 포함
-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도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힘.

2013. 3. 3. 고용노동부, 화성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 가운데 712건에 대해 사업주 형사입건, 143건에 대해 2억4938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

2013. 3. 4. 경기도, 삼성전자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하기로 결정

2013. 3.1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착수함.

2013. 4. 4. 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과 협력업체 STI서비스 임직원 등 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힘.

2013. 4. 7. 검찰, 안전재해예방조치 불이행 등의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삼성 화성사업장 인프라 기술센터장인 이모 전무, 삼성 환경안전팀장인 김모 전무, 하도급업체 (주)에스티아이서비스 최모 전무를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 사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업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음.

2013. 5. 2.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 2차 사고 발생, 배관 철거 작업 하던 하청업체 성도ENG 노동자 3명 부상

2013. 6.10.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삼성전자 관계자 2명과 협력업체인 성도ENG 관계자 2명 등 안전관리책임자와 현장 감독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2013. 8. 8. 검찰, 경찰과 고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았다고

발힘(1차 사고에서 24명, 2차 사고에서 10명으로 총 34명, 중복자 제외 실제 28명).

- 경찰, 1차 사고에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 사장 등 삼성전자 4명과 협력업체 3명, 2차 사고에서 삼성전자 2명과 협력업체 2명 등 총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
- 노동청, 1, 2차 사고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11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경기도 특사경, 1, 2차 사고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4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
- 한강유역환경청, 1차 사고 당시 배풍기를 틀어 공장 내 연기를 외부에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8명 송치(2차 사고에서는 배풍기 가동 안함)

2013.11.29. 검찰, 사고예방조치 소홀 등의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삼성 임직원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11명 기소,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법인 2곳 기소

-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씨 등 7명 불구속 기소, 환경안전책임부문 부사장 정모씨 등 4명 약식기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 사장과 환경안전팀장 김모씨 등 일부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 3. 현재 재판 진행 중⁷²

참

72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

공안 수사

26. 이석기 의원 등에 ‘내란 음모’ 혐의 적용 수사

1. 사건 개요

국가정보원은 2013년 8월 28일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하여 압수수색을 했음. 이후 국정원은 이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같은 해 5월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기관시설을 습격하자는 등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회의의 녹취록을 공개하였음.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간부 4명을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 : 수원지검 공안부

지검장 김수남, 신경식(2013.12.부터) - 2차장 차경환 - 주임검사 최태원 부장⁷³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8.28. 국가정보원,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직자 10여명의 자택, 사무실 18곳 압수수색. 수원지검, 수사전담팀 구성

2013. 9. 4.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이석기 의원 구속

2013. 9.12. 국정원, 김미희 의원·김재연 의원의 최근 1년간 통화내역 등 압수수색

2013. 9.13.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2013. 9.16. 국정원, 통진당 소속 인사 5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2013. 9.17. 국정원,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의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2013. 9.24.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2013. 9.25. 검찰,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⁷³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한 주임검사는 최태원 검사이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주임검사는 김훈영 검사. 재판은 병합하여 진행

수원시 부위원장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2013. 9.26. 검찰, 이석기 의원을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2013.10.24. 검찰,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통합진보당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2014. 2.13. 검찰, 국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석기 의원의 비서 등 23명 기소.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 유모씨와 진보당 지역위원장 이모씨 2명 구속 기소. 진보당 관련자 주모씨 등 21명 불구속 기소

4. 재판 결과

2014. 2.17. 1심,⁷⁴ 유죄

-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 이상호·조양원·김홍열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홍순석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 한동근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2014. 3.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 ⁷⁵

참

74 수원지법 2013고합620 형사합의12부 김정운 부장판사

75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 형사9부 이민걸 부장판사

27.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

1. 사건 개요

2004년 4월 탈북한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200여 명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국정원에 의해 체포,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여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의 회유와 강압조사로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밝혀져 무죄 판결을 받음.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 3건(①중국 길림성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②화룡시 공안국이 선양(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보낸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③변호인단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세관)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지휘 :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팀장 :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2014. 3.7. 수사팀으로 전환. 팀장 :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 수사팀에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 특수1부 서정식 검사 투입

<유우성씨 간첩혐의 수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최교일 - 2차장 이금로 - 공안1부장 이상호 - 주임검사 한정화

<항소심 공소 유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부장 최성남 (2013.10. 항소 당시)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걸 - 부장 이현철 (2014. 1. 이후)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2.10.30.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 입국,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이후 6개월 간 조사 받음.

2013. 1.10. 국정원, 유우성씨 간첩 혐의로 체포

2013. 2.26.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2013. 4.26. 유가려씨, 법원의 인신구제청구 심문 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옴.

2013. 4.27. 유가려씨, 긴급 기자회견 열어 국정원(합동신문센터)에서 폭행, 협박, 허위진술 강요당했다고 폭로

2013. 8.22. 서울지법, 유우성씨의 간첩활동 입증할 핵심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국가보안법 혐의 무죄 선고

2013.10. 2. 검찰 항소로, 2심 재판 시작

2013.11. 1. 검찰,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에 중국 화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우성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제출

2013.12. 6. 유씨 변호인단,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공식 발급기관)에서 받은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 제출. 검찰, 재판부에 선양영사관한테서 전달받은 화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 제출

2013.12.20. 검찰, 변호인단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답변서(변호인단이 낸 출입경기록이 틀렸다는 내용) 제출

2013.12.23. 재판부, 변호인과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에 양측의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 신청

2014. 1. 7. 유씨 측, 검찰과 국정원(성명불상자)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 날조죄로 경찰에 고소

2014. 2.13. 중국 정부(주한 중국 대사관), 법원에 보낸 회신을 통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되었고, 유 씨 변호인단이 낸 2건의 문서가 합법하다고 답변, 위조 경위에 대해 수사 착수하겠다고 밝힘.

2014. 2.14. 검찰, 위조 부인, 진상 밝히겠다고 입장 발표 / 국정원, 중국 선양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문건이라고 해명

2014. 2.18. 검찰, 증거 조작 관련,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지휘 아래 노정환 서울중

양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총 5명의 진상조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성

2014. 2.22. 진상조사팀, 조백상 선양 총영사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14. 2.24. 진상조사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국정원, 검찰,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한 감정 요청

2014. 2.25. 국정원, 자체 진상 조사 결과 검찰에 제출 / 민주당 진상조사단, 선양 영사관 현지 조사

2014. 2.26. 천주교인권위원회,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우성 씨를 수사하고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과 주 선양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를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4. 2.28. 진상조사팀, 검찰의 문서 취득, 전달 과정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 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문서 감정 결과, 변호인 측과 검찰이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문서의 판인이 다르다고 회신

2014. 3. 5. 서울중앙지검, 천주교 인권위 고발 사건 진상조사팀에 배당, 수사 착수 / 중국 공문서의 입수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검찰의 3차 소환조사 받고 귀가 뒤 자살 기도

2014. 3. 7. 검찰, 진상조사팀에서 수사팀으로 전환

2014. 3. 9. 국정원, 대국민 사과문 발표

2014. 3.10. 오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감 표명. 오후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2014. 3.12. 수사팀, 자살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체포. 유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답변서 위조 혐의

2014. 3.13. 수사팀, 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 2차 소환조사

2014. 3.15. 수사팀,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로 구속 /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게 반박 답변서 입수 요구한 국정원 김모 과장, 일명 '김사장' 체포

2014. 3.17.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유씨 출입경기록 설명서 등 유씨측 문건의 위변조 의혹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

2014. 3.19. 수사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 일명 '김사장' 구속

2014. 3.20.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탈북자로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탈북자 지원금 77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사기와 위계공무집행 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로 유우성 씨 고발, 형사2부에 배당(부장검사 이두봉)

2014. 3.22. 수사팀,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 소환조사 /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인 국정원 권모 과장, 19~21일 검찰 조사 후 자살 시도

2014. 3.26. 수사팀, 이인철 영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14. 3.27. 검찰(공안1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포함해 20건 철회

2014. 3.28. 항소심 재판부(형사7부 재판장 김홍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사기죄 추가) 받아들여 결심공판 2주 뒤로 연기

2014. 3.29. 수사팀, 유우성씨 수사와 재판에 관련한 검사 2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2014. 3.31. 수사팀,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국정원 김모 과장,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와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구속 기소. 김 과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추가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3. 8.22. 1심⁷⁶ 선고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여권법 위반(북한 국적으로 속이고 3년 간 정착지원금을 받고 한국 여권 만들어 사용 한 점)은 유죄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원 선고

2014. 3. 31.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⁷⁷

[참]

76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186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

77 서울고법 2013노2728 형사7부

기타 수사

28. 공무원노조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 현수막 관련 수사

1. 사건 개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의 노조 간부들이 2013년 7월 24일과 8월 20일 광주 북구청 보건소 앞 도로변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기 위해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를 패러디한 '귀태가'를 적은 현수막을 걸고, 또 광산구지부 등 노조 간부들이 을지연습 기간 중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광산구청과 남구청 주변에서 공무원들에게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538장을 배포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광주지검 공안부

지검장 신경식 - 차장 오정돈 - 부장 이근수 - 주임 허지훈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8.29. 경찰, 광주지역 전공노 간부들 출석 요구

2013. 9.10. 경찰, 전공노 광주 북구청과 광산구청 노조에 대해 압수수색

2013.11.18. 광주북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 공무원 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13.12.20. 검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공무 외의 일을 하기 위해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

- '귀태가' 현수막 내건 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의 백모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전 정책부장 등 4명, 지방공무원법 위반, 허가받지 않고 현수막 내건 것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
- 을지연습 비판한 유인물 배포 혐의로 광산구지부(광주본부장 겸임)의 박모 지부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남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4명,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

4. 재판

2014. 3. 현재 재판 진행 중 78



78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

29.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관련 수사

1. 사건 개요

2013년 5월 18일 전후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이 올 10월에 만기된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은폐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요구가 있었음.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이 한시적인 TF(특별수사팀)를 구성해 추징금 환수에 나선 사건

2. 수사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김민형 광주지검 검사 (대검 파견)

* 2013년 6월 3일 <전두환 전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전담팀> 검사 9명 및 수사관 30여명 등 총 52명으로 구성

지검장 조영곤 - 2차장 이진한 - 팀장 김형준 외사부장

* 2013년 7월 18일 <전두환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으로 팀을 확대하면서 팀장을 외사부장인 김형준으로 임명. 검사 9명 및 수사관 30여명, 국세청 2명, 관세청 2명 등 총 52명으로 구성

지검장 김수남 - 2차장 윤웅결 - 팀장 노정환 외사부장 - 소속 검사 신건호 (2014. 3. 5. 현재)

3. 수사 경과 및 결과

2013. 6. 3.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집행팀 구성

2013. 6.27. 국회 본회의에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⁷⁹

2013. 7.10. 전재용 보유 이태원 준아트빌 3채 압류

2013. 7.12.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포

2013. 7.16.~ 9.10. 검찰, 전두환 일가 자택 등 90개소 총 16회에 걸쳐 압수수색. 전두환 일가 등 연인원 총 316명 조사

2013. 7.18.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확대, 개편

2013. 8.27. 전두환 일가 차명 보유 연희동 사저 마당 2필지 압류

2013. 8.30. 전재국 보유 허브빌리지 33필지 압류

2013. 9. 3. 검찰, 전재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2013. 9. 6. 검찰, 재산관리인 이창석 60억원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

2013. 9.10. 전씨 측,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 납부계획 발표

2013.12. 6.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와 이창석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4. 재판 경과 및 결과

2014. 1.24. 검찰, 공소장 변경(조세포탈액을 60억에서 27억으로 축소)

2014. 2.12. 1심 선고⁸⁰

- 전재용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 이창석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0억원

2014. 3.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

참

79 전두환씨 추징금 환수 시효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 제 3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 가능함.

8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 김중호 부장판사

참여연대 자료집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 박근혜정부 검찰 1년 보고서

발행일 2014. 4. 1.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담 당 김은영, 이상미 간사 02-723-0666 jw@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